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646호 2022년 6월 23일(목)

경 상 북 도

■ 훈 령

○ 경상북도시 · 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 폐지령
(경상북도 훈령 제1600호) ····· 7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예 규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예규
(경상북도 예규 제1563호) ····· 9

■ 고 시

○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등 승인 정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9호) ····· 12

○ 가음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0호) ····· 61

○ 경상북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1호) ····· 63

○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2호) ····· 168

○ 중화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3호) ····· 179

○ 횡계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4호) ····· 181

■ 공 고

○ 주실령터널 건설공사 기본설계(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99호) ····· 184

○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04호) ····· 187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 등록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06호) ····· 189

○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07호) ····· 190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1210호) ····· 191

○ 2022년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고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11호) ····· 192

시 군

■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03호) ····· 195

○ 도시계획시설[도로:용상소로(2-4)]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05호) ····· 199

○ 구미 공원조성계획(44호 근린공원, 174호 소공원) 결정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2-140호) ····· 208

○ 경산 도시관리계획(임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82호) ····· 222

○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2-50호) ····· 248

○ 청도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청도군 고시 제2022-57호) ····· 250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22-83호) ····· 258

■ 공 고

○ 경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서류 열람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2-1591호) ····· 282

○ 보상계획 열람공고
(김천시 공고 제2022-1518호) ····· 288

○ 보상계획 열람(정정)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2-1295호) ····· 293

○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1202호) ····· 304

○ 구미도시계획시설(녹지:원평, 상모, 인동)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안) 공람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1213호) ····· 306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영천시 공고 제2022-948호) ····· 335

기 타

■ 고 시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3호) ····· 378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20호) ····· 394

◈◈

경 상 북 도

훈 령

경상북도시 · 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훈령 제1600호

경상북도시 · 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 폐지령

경상북도시 · 군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상 북 도

예 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6월 23일

경상북도 예규 제1563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예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9호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등 승인 정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5호(2022.4.18.)로 고시한「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편입토지조서시설투자계획(변경)의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정정 고시 사유**

○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확정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5호(2022.4.18.)로 고시한「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지정(변경)·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사항 중 편입토지조서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가. 관광단지명 : 경주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다. 최초지정일 : 1994. 3. 24

라. 최종지정일 : 2022. 4. 18. (경주시 고시 제2022-105호)

마. 지 정 면 적 : 기정 - 6,419,256㎡

변경 - 6,416,358.3㎡ (감 2,897.7㎡)

바. 사 업 기 간

1단계 : 1996년 ~ 2008년

2단계 : 2009년 ~ 2022년

사. 사　업　비 : 984,465백만원(민자)

아.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엠오디

2.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시설지구명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6,419,256	6,416,358.3	감 2,897.7	
공공편익시설지구	200,154	200,154	-	
숙박시설지구	564,617	564,617	-	
상가시설지구	43,764	43,764	-	

시설지구명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1,609,606	1,609,606	-	
소 계		4,001,115	3,998,217.3	감 2,897.7	
기타시설지구	시 설	145,661	145,661	-	
	녹 지	1,324,902	1,326,620.4	증 1,718.4	
	원 형 녹 지	2,530,552	2,525,935.9	감 4,616.1	

나. 조성계획 변경 정정 사유

○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편입토지 1개 필지 누락에 따른 정정고시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6,419,256	6,416,358.3	감 2,897.7	355	355	–	179,247	179,247	–	1~10	–
계				200,154	200,154	–	18	18	–	11,986	11,986	–	1~4	–
공공편익시설지구	관리사무소	소 계		13,540	13,540	–	9	9	–	5,888	5,888	–	1~4	관리사무소 9동
		관광목장지역		8,075	8,075	–	4	4	–	3,500	3,500	–	2~4	–
		회원제골프장지역		4,265	4,265	–	2	2	–	1,045	1,045	–	1	기사대기실 포함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1,200	1,200	–	3	3	–	1,343	1,343	–	1	관리동, 창고동 골프연습동 포함
	관리본부	소 계		3,720	3,720	–	1	1	–	2,900	2,900	–	3	–
		관광목장지역		3,720	3,720	–	1	1	–	2,900	2,900	–	3	–
	주차장	소 계		42,324	42,324	–	1	1	–	2,038	2,038	–	–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관광목장지역		2,570	2,570	–	–	–	–	–	–	–	–	–
		회원제골프장지역		12,214	12,214	–	–	–	–	–	–	–	–	–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5,720	5,720	–	–	–	–	–	–	–	–	–
		노인휴양지역		8,733	8,733	–	1	1	–	2,038	2,038	–	1	–
		숙박지역		7,785	7,785	–	–	–	–	–	–	–	–	1개소
		청소년수련지역		3,344	3,344	–	–	–	–	–	–	–	–	1개소
		관광농원지역		1,958	1,958	–	–	–	–	–	–	–	–	2개소
	쓰레기매립장	소 계		7,300	7,300	–	–	–	–	–	–	–	–	–
		관광목장지역		7,300	7,300	–	–	–	–	–	–	–		예지물집하장포함
	오수처리시설	소 계		8,800	8,800	–	7	7	–	1,160	1,160	–	1~3	–
		관광목장지역		8,800	8,800	–	7	7	–	1,160	1,160	–	1~3	소각장 및 부대시설,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저수지 포함
	배수지	소 계		5,128	5,128	–	–	–	–	–	–	–	–	5개소
		중심위락지역		630	630	–	–	–	–	–	–	–	–	–
		숙박지역		3,190	3,190	–	–	–	–	–	–	–	–	–
		자연휴양림지역		1,308	1,308	–	–	–	–	–	–	–	–	–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소 계		119,342	119,342	–	–	–	–	–	–	–	–	–
		관광목장지역		12,963	12,963	–	–	–	–	–	–	–	–	–
		중심위락지역	콘도2	50,372	50,372	–	–	–	–	–	–	–	–	–
		숙박지역	콘도3	22,172	22,172	–	–	–	–	–	–	–	–	–
		자연휴양림지역		21,901	21,901	–	–	–	–	–	–	–	–	–
		노인휴양지역		8,967	8,967	–	–	–	–	–	–	–	–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회원제골프장		2,967	2,967	–	–	–	–	–	–	–	–	–
계				564,617	564,617	–	264	264	–	106,961	106,961	–	1~10	–
숙박시설지구	콘도미니엄	소 계		316,383	316,383	–	208	208	–	76,631	76,631	–	1~10	–
		중심위락지역	콘도1	83,490	83,490	–	60	60	–	14,580	14,580	–	–	–
			콘도2	132,990	132,990	–	119	119	–	22,810	22,810	–	1~10	–
		숙박지역	콘도3	99,903	99,903	–	29	29	–	39,241	39,241	–	1~10	관리상가 포함
	펜션부지	소 계		16,997	16,997	–	16	16	–	15,330	15,330	–	1~10	–
		숙박지역		16,997	16,997	–	16	16	–	15,330	15,330	–	1~10	–
	풀빌라	소 계		231,237	231,237	–	40	40	–	15,000	15,000	–	6	–
		숙박지역		231,237	231,237	–	40	40	–	15,000	15,000	–	6	–
계				43,764	43,764	–	18	18	–	23,279	23,279	–	1~5	–
상가	일반	소 계		25,966	25,966	–	7	7	–	11,480	11,480	–	1~5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시설지구	상가	관광목장지역		12,370	12,370	–	3	3	–	5,690	5,690	–	1~5	바베큐식당 전망식당 일반상가
		중심위락지역		11,231	11,231	–	3	3	–	4,790	4,790	–	1~5	–
		숙박지역		2,365	2,365	–	1	1	–	1,000	1,000	–	1~5	–
	클럽하우스	소 계		6,782	6,782	–	4	4	–	4,750	4,750	–	2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지역		4,982	4,982	–	3	3	–	2,871	2,871	–	2	남성 샤워장, 창고 포함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1,800	1,800	–	1	1	–	1,879	1,879	–	1	–
	썰매장휴게소	소 계		1,983	1,983	–	1	1	–	690	690	–	2	–
		관광목장지역		1,983	1,983	–	1	1	–	690	690	–	2	–
	간이휴게소	소 계		733	733		5	5	–	359	359	–	1	–
		회원제골프장지역		268	268	–	2	2	–	141	141	–	1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300	300	–	1	1	–	83	83	–	1	–
			대중골프장2	165	165	–	2	2	–	135	135	–	–	–
	아울렛	소 계		8,300	8,300	–	1	1	–	6,000	6,000	–	3	–
		숙박지역		8,300	8,300	–	1	1	–	6,000	6,000	–	3	–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휴양문화시설)	화훼공원	소 계		21,584	21,584	–	2	2	–	820	820	–	1~2	실내온실, 화장실, 1개소 포함
		관광목장지역		21,584	21,584	–	2	2	–	820	820	–	1~2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야생동물방사공원	소 계	154,625	154,625	–	14	14	–	5,977	5,977	–	1~3	–
		관광목장지역	154,625	154,625	–	14	14	–	5,977	5,977	–	1~3	부대시설 포함
	야외놀이마당	소 계	4,118	4,118	–	–	–	–	–	–	–	–	–
		관광목장지역	4,118	4,118	–	–	–	–	–	–	–	–	–
	노인휴양소	소 계	27,016	27,016	–	3	3	–	12,998	12,998	–	3	–
		노인휴양지역	27,016	27,016	–	3	3	–	12,998	12,998	–	3	창고시설 포함
	종합휴양센터	소 계	4,980	4,980	–	1	1	–	2,500	2,500	–	4	–
		자연휴양림지역	4,980	4,980	–	1	1	–	2,500	2,500	–	4	–
	야생화단지	소 계	40,070	40,070	–	–	–	–	–	–	–	–	–
		중심위락지역	40,070	40,070	–	–	–	–	–	–	–	–	–
	텃밭	소 계	58,630	58,630	–	–	–	–	–	–	–	–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숙박지역	58,630	58,630	–	–	–	–	–	–	–	–	–
	관광농원	소 계	184,951	184,951	–	6	6	–	3,480	3,480	–	3	–
		관광농원지역	139,981	139,981	–	5	5	–	1,980	1,980	–	3	화장실 4개소 포함
		관광목장지역	37,560	37,560	–	–	–	–	–	–	–	–	–
		숙박지역	7,410	7,410	–	1	1	–	1,500	1,500	–	–	–
	약초, 허브원	소 계	72,629	72,629	–	2	2	–	90	90	–	1	–
		관광농원지역	72,629	72,629	–	2	2	–	90	90	–	1	화장실 2개소
	캠핑장	소 계	158,955	158,955	–	8	8	–	360	360	–	–	–
		숙박지역	40,130	40,130	–	4	4	–	180	180	–	–	화장실 4개소
		청소년수련지역	115,506	115,506	–	4	4	–	180	180	–	–	화장실 4개소
		관광농원지역	3,319	3,319	–	–	–	–	–	–	–	–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오토캠핑장	소 계		104,798	104,798	–	3	3	–	135	135	–	–	–
		숙박지역		104,798	104,798	–	3	3	–	135	135	–	–	화장실 3개소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운동오락시설)	썰매장	소 계		15,340	15,340	–	2	2	–	273	273	–	1	창고, 화장실등
		관광목장지역		15,340	15,340	–	2	2	–	273	273	–	1	–
	루 지	소 계		44,882	44,882	–	2	2	–	529	529	–	2	–
		관광목장지역		44,882	44,882	–	2	2	–	529	529	–	2	–
	골프코스시설	소 계		543,920	543,920	–	–	–	–	–	–	–	–	–
		회원제골프장지역		222,253	222,253	–	–	–	–	–	–	–	–	연습그린 및 카트도로 포함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135,604	135,604	–	–	–	–	–	–	–	–	연습그린 및 카트도로 포함
			대중골프장2	186,063	186,063	–	–	–	–	–	–	–	–	카트도로 포함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골프연습장	소 계		11,270	11,270	–	–	–	–	–	–	–	–	–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11,270	11,270	–	–	–	–	–	–	–	–	–
옥외수영장	소 계		890	890	–	–	–	–	–	–	–	–	–
	숙박지역		890	890	–	–	–	–	–	–	–	–	–
zip line	소 계		3,867	3,867	–	7	7	–	1,400	1,400	–	–	–
	숙박지역		2,171	2,171	–	4	4	–	800	800	–	–	–
	청소년수련지역		1,326	1,326	–	2	2	–	400	400	–	–	–
	관광농원지역		370	370	–	1	1	–	200	200	–	–	–
모험놀이시설	소 계		156,581	156,581	–	1	1	–	2,000	2,000	–	–	–
	청소년수련지역		156,581	156,581	–	1	1	–	2,000	2,000	–	–	–
경기진행실	소 계		500	500	–	1	1	–	309	309	–	–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회원제골프장지역		500	500	–	1	1	–	309	309	–	–	
계				4,001,115	3,998,217.3	감 2,897.7	3	3	–	6,150	6,150	–	5	–
기타 시설 지구	환경 교육관	소 계		5,920	5,920	–	1	1	–	4,950	4,950	–	5	
		관광목장지역		5,920	5,920	–	1	1	–	4,950	4,950	–	5	–
	태양광 발전 설비	소 계		61,740	61,740	–	2	2	–	1,200	1,200	–	1~3	–
		관광목장지역		61,740	61,740	–	2	2	–	1,200	1,200	–	1~3	–
	저수지	소 계		65,681	65,681	–	–	–	–	–	–	–	–	–
		중심위락지역		5,800	5,800	–	–	–	–	–	–	–	–	1개소
		회원제골프장지역		20,481	20,481	–	–	–	–	–	–	–	–	5개소
		대중 골프장 지역	대중 골프장1	6,964	6,964	–	–	–	–	–	–	–	–	2개소
			대중 골프장2	12,532	12,532	–	–	–	–	–	–	–	–	4게소
		자연휴양림지역		19,904	19,904	–	–	–	–	–	–	–	–	1개소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저류지	소 계		5,029	5,029	–	–	–	–	–	–	–	–	–
		숙박지역		1,191	1,191	–	–	–	–	–	–	–	–	–
		관광농원지역		3,838	3,838	–	–	–	–	–	–	–	–	–
	생태하천	소 계		7,291	7,291	–	–	–	–	–	–	–	–	–
		숙박지역		2,541	2,541	–	–	–	–	–	–	–	–	–
		관광농원지역		4,750	4,750	–	–	–	–	–	–	–	–	–
	녹지	소 계		1,324,902	1,326,620.4	증 1,718.4	–	–	–	–	–	–	–	–
		관광목장지역		142,643	142,643	–	–	–	–	–	–	–	–	–
		중심위락지역		3,183	3,183	–	–	–	–	–	–	–	–	–
		회원제골프장지역		496,000	496,000	–	–	–	–	–	–	–	–	–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1	280,207	280,207	–	–	–	–	–	–	–	–	–
			대중골프장2	197,720	199,438.4	증 1,718.4	–	–	–	–	–	–	–	–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동수(동)			건축연면적(㎡)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숙박지역		124,500	124,500	–	–	–	–	–	–	–	–	–
		노인휴양지역		10,857	10,857	–	–	–	–	–	–	–	–	–
		자연휴양림지역		69,792	69,792	–	–	–	–	–	–	–	–	–
	원형녹지	소 계		2,530,552	2,525,935.9	감 4,616.1	–	–	–	–	–	–	–	–
		관광목장지역		261,122	261,122	–	–	–	–	–	–	–	–	–
		회원제골프장지역		22,767	22,767	–	–	–	–	–	–	–	–	–
		대중골프장지역	대중골프장2	113,393	108,776.9	감 4,616.1	–	–	–	–	–	–	–	–
		관광농원지역		32,501	32,501	–	–	–	–	–	–	–	–	–
		자연휴양림지역		2,100,769	2,100,769	–	–	–	–	–	–	–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1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붙임 2

5.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경상북도 관광정책과(☎ 054-880-3190),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054-779-6082) 및 주식회사 엠오디 운영2팀(☎ 054-740-0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016,205.0	7,013,307.3	6,419,256.0	6,416,358.3			
1	양남면 신대리	1188	1188	임	542.0	542.0	542.0	54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	양남면 신대리	1265-3	1265-3	체	4,029.0	4,029.0	4,029.0	4,02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	양남면 신대리	산138	산138	임	59,381.0	59,381.0	30,311.0	30,31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138-1	산138-1	임	28,685.0		28,68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	양남면 신대리	산139	산139	임	24,595.0	24,595.0	24,595.0	24,595.0	나아리	김석주	미등기
5	양남면 신대리	산140-1	산140-1	체	502,060.0	502,060.0	502,060.0	502,06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	양남면 신대리	산140-2	산140-2	임	3.0	3.0	3.0	3.0		경주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	양남면 신대리	산140-6	산140-6	임	225,350.0	225,350.0	205,325.0	205,32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140-94	산140-94	임	671.0		67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140-88	산140-88	임	11,896.0		11,89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8	양남면 신대리	산140-7	산140-7	임	323,872.0	323,872.0	323,872.0	323,872.0		경주시	
9	양남면 신대리	1265	1265	대	71,380.0	71,380.0	71,380.0	71,38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0	양남면 신대리	산140-84	산140-84	임	1,044.0	1,044.0	1,044.0	1,04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1	양남면 신대리	산140-11	산140-11	임	7,293.0	7,293.0	7,293.0	7,29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2	양남면 신대리	산140-89	산140-89	임	12,244.0	12,244.0	12,244.0	12,24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140-90	산140-90	임	6,581.0		6,58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	양남면 신대리	산140 -12	산140 -12	임	4,950.0	4,950.0	4,950.0	4,95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4	양남면 신대리	산140 -14	산140 -14	임	913.0	913.0	913.0	913.0		경상북도	
15	양남면 신대리	산140 -16	산140 -16	임	616.0	616.0	616.0	616.0		경상북도	
16	양남면 신대리	산140 -19	산140 -19	임	68.0	68.0	68.0	68.0		경상북도	
17	양남면 신대리	산140 -20	산140 -20	임	107.0	107.0	107.0	107.0		경상북도	
18	양남면 신대리	산140 -21	산140 -21	임	331.0	331.0	331.0	331.0		경상북도	
19	양남면 신대리	산140 -22	산140 -22	임	877.0	877.0	877.0	877.0		경상북도	미등기
20	양남면 신대리	산140 -24	산140 -24	임	1,568.0	1,568.0	1,568.0	1,568.0		경상북도	미등기
21	양남면 신대리	산140 -26	산140 -26	임	435,056.0	435,056.0	435,056.0	435,05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양남면 신대리	산140 -95	산140 -95	임	624.0		62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2	양남면 신대리	산140 -91	산140 -91	임	36,277.0	35,890.0	36,277.0	35,89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3	양남면 신대리		산140 -97	임		387.0		38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4	양남면 신대리	산140 -92	산140 -92	임	14,427.0	14,427.0	14,427.0	14,42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140 -93	산140 -93	임	397,365.0		397,36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5	양남면 신대리	산140 -27	산140 -27	임	382.0	382.0	382.0	38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6	양남면 신대리	산140 -28	산140 -28	임	1,148.0	1,148.0	1,148.0	1,14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7	양남면 신대리	산140 -29	산140 -29	임	1,255.0	1,255.0	1,255.0	1,25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28	양남면 신대리	산140 -30	산140 -30	임	146.0	146.0	146.0	14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9	양남면 신대리	산140 -31	산140 -31	임	406.0	406.0	406.0	40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0	양남면 신대리	산140 -33	산140 -33	임	19,988.0	19,988.0	19,988.0	19,98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1	양남면 신대리	산140 -34	산140 -34	임	3,477.0	3,477.0	3,477.0	3,47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2	양남면 신대리	산140 -35	산140 -35	임	453.0	453.0	453.0	45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3	양남면 신대리	산140 -38	산140 -38	임	3,196.0	3,196.0	3,196.0	3,19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4	양남면 신대리	산140 -40	산140 -40	임	804.0	804.0	804.0	80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5	양남면 신대리	산140 -85	산140 -85	임	35,346.0	35,346.0	35,346.0	35,34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6	양남면 신대리	산140 -42	산140 -42	임	78.0	78.0	78.0	7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7	양남면 신대리	산140 -43	산140 -43	임	39.0	39.0	39.0	3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8	양남면 신대리	산140 -45	산140 -45	임	1,139.0	1,139.0	1,139.0	1,13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39	양남면 신대리	산140 -46	산140 -46	임	15.0	15.0	15.0	1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0	양남면 신대리	산140 -47	산140 -47	임	4,449.0	4,449.0	4,449.0	4,44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1	양남면 신대리	산140 -48	산140 -48	체	77,231.0	77,231.0	77,231.0	77,23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140 -96	산140 -96		580.0		58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2	양남면 신대리	산140 -49	산140 -49	체	4,346.0	4,346.0	4,346.0	4,34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3	양남면 신대리	산140 -50	산140 -50	체	18,421.0	18,421.0	18,421.0	18,42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4	양남면 신대리	산140 -86	산140 -86	체	1,981.0	1,981.0	1,981.0	1,98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45	양남면 신대리	산140 -87	산140 -87	체	1,702.0	1,702.0	1,702.0	1,70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6	양남면 신대리	산140 -81	산140 -81	체	100,082.0	100,082.0	100,082.0	100,08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7	양남면 신대리	산140 -83	산140 -83	체	326.0	326.0	326.0	32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48	양남면 신대리	산140 -52	산140 -52	체	316.0	316.0	316.0	31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49	양남면 신대리	산140 -53	산140 -53	체	392.0	392.0	392.0	39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0	양남면 신대리	산140 -54	산140 -54	체	832.0	832.0	832.0	83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1	양남면 신대리	산140 -55	산140 -55	체	953.0	953.0	953.0	95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2	양남면 신대리	산140 -56	산140 -56	체	738.0	738.0	738.0	73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3	양남면 신대리	산140 -57	산140 -57	체	20,597.0	20,597.0	20,597.0	20,59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4	양남면 신대리	산140 -58	산140 -58	체	87.0	87.0	87.0	8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5	양남면 신대리	산140 -59	산140 -59	체	199.0	199.0	199.0	19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6	양남면 신대리	산140 -60	산140 -60	체	701.0	701.0	701.0	70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7	양남면 신대리	산140 -61	산140 -61	체	4,483.0	4,483.0	4,483.0	4,48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8	양남면 신대리	산140 -62	산140 -62	체	2,852.0	2,852.0	2,852.0	2,85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59	양남면 신대리	산140 -63	산140 -63	체	6,768.0	6,768.0	6,768.0	6,76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0	양남면 신대리	산140 -64	산140 -64	체	3,074.0	3,074.0	3,074.0	3,07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1	양남면 신대리	산140 -65	산140 -65	체	576.0	576.0	576.0	57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2	양남면 신대리	산140 -66	산140 -66	체	1,313.0	1,313.0	1,313.0	1,31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3	양남면 신대리	산140 -67	산140 -67	체	1,922.0	1,922.0	1,922.0	1,92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4	양남면 신대리	산140 -68	산140 -68	체	387.0	387.0	387.0	38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5	양남면 신대리	산140 -69	산140 -69	체	733.0	733.0	733.0	73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6	양남면 신대리	산140 -70	산140 -70	체	176.0	176.0	176.0	17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7	양남면 신대리	산140 -71	산140 -71	체	455.0	455.0	455.0	45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8	양남면 신대리	산140 -72	산140 -72	체	8,914.0	8,914.0	8,914.0	8,91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69	양남면 신대리	산140 -73	산140 -73	체	12,748.0	12,748.0	12,748.0	12,74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0	양남면 신대리	산140 -74	산140 -74	체	1,475.0	1,475.0	1,475.0	1,47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1	양남면 신대리	산140 -75	산140 -75	체	3,263.0	3,263.0	3,263.0	3,26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2	양남면 신대리	산140 -76	산140 -76	체	1,930.0	1,930.0	1,930.0	1,93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3	양남면 신대리	산140-77	산140-77	체	622.0	622.0	622.0	62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4	양남면 신대리	산140-78	산140-78	체	762.0	762.0	762.0	76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5	양남면 신대리	산140-79	산140-79	체	9,200.0	9,200.0	9,200.0	9,20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6	양남면 신대리	산141	산141	임	4,760.0	4,760.0	4,760.0	4,760.0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61	이만도	
77	양남면 신대리	산157-2	산157-2	임	51,281.0	47,209.0	35,592.0	31,52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8	양남면 신대리		산157-3	임		4,072.0		4,07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79	양남면 신대리	산301	산301	체	21,847.0	21,847.0	21,847.0	21,84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80	양남면 신대리	산301-1	산301-1	임	32,500.0	32,500.0	2,093.0	2,09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81	양남면 신대리	산302-1	산302-1	체	10,616.0	10,616.0	10,616.0	10,61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2	양남면 신대리	산302-3	산302-3	임	11,645.0	11,645.0	11,645.0	11,64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83	양남면 신대리	산304-32	산304-32	임	374,816.0	374,816.0	372,608.0	372,60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84	양남면 신대리	산304-9	산304-9	임	5,468.0	5,468.0	5,468.0	5,468.0		경상북도	
85	양남면 신대리	산304-10	산304-10	임	17,327.0	17,327.0	17,327.0	17,327.0		경상북도	
86	양남면 신대리	산304-12	산304-12	임	494.0	494.0	494.0	494.0		경상북도	
87	양남면 신대리	산304-14	산304-14	임	538.0	538.0	538.0	53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88	양남면 신대리	산304-15	산304-15	임	348.0	348.0	348.0	34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89	양남면 신대리	산304-19	산304-19	임	3,803.0	3,803.0	3,803.0	3,80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0	양남면 신대리	산304-20	산304-20	임	12,567.0	12,567.0	12,567.0	12,56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91	양남면 신대리	산304 -31	산304 -31	임	269.0	269.0	269.0	26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2	양남면 신대리	산304 -22	산304 -22	임	68.0	68.0	68.0	6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3	양남면 신대리	산304 -23	산304 -23	임	88.0	88.0	88.0	8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4	양남면 신대리	산304 -24	산304 -24	임	83.0	83.0	83.0	8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5	양남면 신대리	산304 -25	산304 -25	임	305.0	305.0	305.0	30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6	양남면 신대리	산304 -27	산304 -27	임	600.0	600.0	600.0	60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7	양남면 신대리	산304 -29	산304 -29	임	1,391.0	1,391.0	1,391.0	1,39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8	양남면 신대리	산307 -1	산307 -1	임	203,415.0	203,415.0	170,124.0	170,12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99	양남면 신대리	산307 -9	산307 -9	임	2,458.0	2,458.0	2,458.0	2,45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0	양남면 신대리	산307-3	산307-3	임	44,393.0	44,393.0	44,393.0	44,393.0		경상북도	
101	양남면 신대리	산307-4	산307-4	임	6,992.0	6,992.0	6,992.0	6,99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02	양남면 신대리	산307-5	산307-5	임	1,808.0	1,808.0	1,808.0	1,80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03	양남면 신대리	산307-6	산307-6	체	303,219.0	303,219.0	303,219.0	303,21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04	양남면 신대리	산307-10	산307-10	체	6,011.0	6,011.0	6,011.0	6,01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05	양남면 신대리	산307-11	산307-11	체	1,998.0	1,998.0	1,998.0	1,99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06	양남면 신대리	산307-12	산307-12	체	6,986.0	6,986.0	6,986.0	6,98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07	양남면 신대리	산307-13	산307-13	체	6,294.0	6,294.0	6,294.0	6,29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08	양남면 신대리	산307-14	산307-14	체	734.0	734.0	734.0	73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09	양남면 신대리	산307-15	산307-15	체	13,092.0	13,092.0	13,092.0	13,09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0	양남면 신대리	산307-16	산307-16	체	652.0	652.0	652.0	65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1	양남면 신대리	산307-17	산307-17	체	7,007.0	7,007.0	7,007.0	7,00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2	양남면 신대리	산307-18	산307-18	체	36,308.0	36,308.0	36,308.0	36,30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3	양남면 신대리	산307-19	산307-19	체	438.0	438.0	438.0	43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4	양남면 신대리	산307-20	산307-20	체	817.0	817.0	817.0	81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5	양남면 신대리	산307-21	산307-21	체	530.0	530.0	530.0	53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6	양남면 신대리	산307-22	산307-22	체	612.0	612.0	612.0	61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117	양남면 신대리	산307-23	산307-23	체	1,009.0	1,009.0	1,009.0	1,00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18	양남면 신대리	산307-24	산307-24	체	3,579.0	3,579.0	3,579.0	3,57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119	양남면 신대리	산307-25	산307-25	체	2,240.0	2,240.0	2,240.0	2,24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120	양남면 신대리	산306	산306	임	23,738.0	23,738.0	23,738.0	23,73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개발㈜	
121	양남면 신대리	산307-29	산307-29	임	570,793.0	570,793.0	570,793.0	570,79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개발㈜	
122	양남면 신대리	1267-2	1267-2	대	75,715.0	75,715.0	75,715.0	75,71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개발㈜	
123	양남면 신대리	1267	1267	대	2,000.0	2,000.0	2,000.0	2,00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개발㈜	
124	양남면 신대리	산307-26	산307-26	도	11,226.0	11,226.0	11,226.0	11,226.0		경주시	
125	양남면 신대리	산307-27	산307-27	임	17,421.0	17,421.0	17,421.0	17,42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개발㈜	
126	양남면 신대리	산308	산308	체	12,800.0	12,800.0	12,800.0	12,80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27	양남면 신대리	산320	산320	임	35,702.0	35,702.0	35,702.0	35,70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28	양남면 신대리	산321	산321	임	48,000.0	48,000.0	48,000.0	48,000.0	울산시 농소면 중산리 757	허권, 배상규	
129	양남면 신대리	산322	산322	임	85,289.0	85,289.0	85,289.0	85,28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30	양남면 신대리	산416-4	산416-4	체	1,564.0	1,564.0	1,564.0	1,56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131	양남면 신대리	산416-2	산416-2	구	1,042.0	1,042.0	1,042.0	1,04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32	양남면 신대리	산416-3	산416-3	구	1,159.0	1,159.0	1,159.0	1,15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33	양남면 신대리	산416-5	산416-5	구	703.0	703.0	703.0	70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307-6	퍼블릭개발㈜	
134	양남면 신대리	산417	산417	구	6,471.0	6,471.0	6,471.0	6,47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양남면 신대리	산50	산50	임	63,471.0		63,47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5	양남면 신대리	산140-3	산140-3	임	1,388.0	1,388.0	1,388.0	1,388.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36	양남면 신대리	산140-4	산140-4	임	2,579.0	2,579.0	2,579.0	2,579.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37	양남면 신대리	산140-5	산140-5	임	2,363.0	2,363.0	2,363.0	2,363.0		경주시	
138	양남면 신대리	산404	산404	구	595.0	595.0	56.0	56.0		국(국토해양부)	
139	양남면 석촌리	844	844	임	1,540.0	1,540.0	1,540.0	1,540.0	외동읍 괘능리 487	이상열	
140	양남면 석촌리	846	846	답	225.0	225.0	225.0	225.0	외동읍 괘능리 487	이상열	
141	양남면 석촌리	846-1	846-1	임	744.0	744.0	744.0	744.0	외동읍 괘능리 487	이상일	
142	양남면 석촌리	846-2	846-2	임	840.0	840.0	840.0	840.0	외동읍 괘능리 487	이상열	
143	양남면 석촌리	910	910	임	139.0	139.0	139.0	139.0	효동리	전상택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4	양남면 석촌리	911-4	911-4	임	215.0	215.0	215.0	215.0		김재익	
145	양남면 석촌리	911-6	911-6	답	284.0	284.0	284.0	284.0		김재익	
146	양남면 석촌리	911-7	911-7	임	932.0	932.0	932.0	932.0	외동읍	연안리 외1	
147	양남면 석촌리	산150	산150	임	412,562.0	412,562.0	210,650.0	210,65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48	양남면 석촌리	산274	산274	임	462,149.0	462,149.0	321,982.0	321,982.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49	양남면 석촌리	산292-1	산292-1	임	437,157.0	437,157.0	433,056.0	433,05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50	양남면 석촌리	산292-2	산292-2	임	2,876.0	2,876.0	860.0	860.0		경주시	
151	양남면 석촌리	산293	산293	임	19,041.0	19,041.0	19,041.0	19,041.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52	양남면 석촌리	산294	산294	임	595.0	595.0	595.0	595.0	외동읍	연안리 외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3	양남면 석촌리	산296	산296	임	2,777.0	2,777.0	2,777.0	2,777.0	외동읍	연안리 외1	
154	양남면 석촌리	산297	산297	임	397.0	397.0	397.0	397.0	외동읍	연안리 외1	
155	양남면 석촌리	0-5	0-5	가			800.0	800.0			
156	양남면 석촌리	0-6	0-6	가			2,807.0	2,807.0			
157	양남면 효동리	산511	산511	임	228,893.0	228,893.0	228,893.0	228,89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58	양남면 효동리	산512 -3	산512 -3	임	2,975.0	2,975.0	2,975.0	2,97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59	양남면 효동리	산512 -4	산512 -4	임	3,570.0	3,570.0	3,570.0	3,57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0	양남면 효동리	산512 -5	산512 -5	임	2,777.0	2,777.0	2,777.0	2,777.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1	양남면 효동리	산512 -6	산512 -6	임	1,983.0	1,983.0	1,983.0	1,98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62	양남면 효동리	산512-7	산512-7	임	1,190.0	1,190.0	1,190.0	1,19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3	양남면 효동리	산512-8	산512-8	임	496.0	496.0	496.0	496.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4	양남면 효동리	산512-9	산512-9	임	694.0	694.0	694.0	69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5	양남면 효동리	산512-10	산512-10	임	893.0	893.0	893.0	893.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6	양남면 효동리	산512-11	산512-11	임	675,987.0	675,987.0	558,125.0	558,125.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7	양남면 효동리	산512-13	산512-13	임	51,749.0	51,749.0	48,480.0	48,480.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68	양남면 효동리	1030	1030	답	450.0	450.0	450.0	450.0	820	황이선	
169	양남면 효동리	1063	1063	답	212.0	212.0	212.0	212.0		우재룡	
170	양남면 효동리	1064	1064	답	175.0	175.0	175.0	175.0		우재룡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71	양남면 신대리		1268	체		398,198.4		398,198.4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지적확정에 따른 신규 지번 부여 예정 (당초지번: 신대리 산138-1, 산140-94, 산140-88, 산140-90, 산140-95, 산140-93, 산140-96, 산50)
172	양남면 신대리		1269	임		2,654.0		2,654.0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3	양남면 신대리		1270	임		15,628.1		15,628.1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4	양남면 신대리		1271	임		663.4		663.4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5	양남면 신대리		1272	임		1,026.5		1,026.5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6	양남면 신대리		1273	임		74,576.4		74,576.4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7	양남면 신대리		1274	임		8,526.5		8,526.5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8	양남면 신대리		1275	임		1,049.7		1,049.7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79	양남면 신대리		1276	임		1,315.6		1,315.6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80	양남면 신대리		1277	임		187.9		187.9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181	양남면 신대리		1278	임		3,148.8		3,148.8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	마우나오션 개발㈜	

붙임 2

Ⅰ. 마우나오션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19,256	감 2,897.7	6,416,358.3	
관리지역	6,419,256	감 2,897.7	6,416,358.3	
계획관리지역	6,419,256	감 2,897.7	6,416,358.3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율	결 정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26 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감 2,897.7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골프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양남1	개발 진흥 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	6,419,256	1992.12.17	
변경	양남1	개발 진흥 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	6,416,358.3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양남 1	개발진흥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면적 변경 기 정 : 6,419,256.0㎡ 변경후 : 6,416,358.3㎡ 변 경 : 감 2,897.7㎡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골프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II.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양남1	경주마우나 오션 관광단지 제2종지구 단위 계획구역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1번지 일원	6,419,256	감 2,897.7	6,416,358.3	1992.12.17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내용

시설지구명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6,419,256	6,416,358.3	감 2,897.7	
공공편익시설지구		200,154	200,154	-	
숙박시설지구		564,617	564,617	-	
상가시설지구		43,764	43,764	-	
관광、휴양오락 시설지구		1,609,606	1,609,606	-	
기타시설지구	소 계	4,001,115	3,998,217.3	감 2,897.7	
	시 설	145,661	145,661	-	
	녹 지	1,324,902	1,326,620.4	증 1,718.4	
	원 형 녹 지	2,530,552	2,525,935.9	감 4,616.1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ㅁ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19,256	감 2,897.7	6,416,358.3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지역	6,419,256	감 2,897.7	6,416,358.3	
계획관리지역	6,419,256	감 2,897.7	6,416,358.3	

ㅁ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율	결 정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산140-26 번지 일원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감 2,897.7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골프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ㅁ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양남1	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	6,419,256	1992.12.17	
변경	양남1	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일원	-	6,416,358.3		

ㅁ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양남 1	개발 진흥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면적 변경 기 정 : 6,419,256.0㎡ 변경후 : 6,416,358.3㎡ 변 경 : 감 2,897.7㎡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골프장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ㅁ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5~10	주간선	5,155	신대리 산307-3	산대리 산140-6	일반 도로	-	지방도945 호선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419,256	6,416,358.3			6,419,256	6,416,358.3	
	1	200,154	200,154	1A	1A	13,540	13,540	관리사무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1B	1B	3,720	3,720	관리본부
				1C	1C	42,324	42,324	주차장
				1D	1D	7,300	7,300	쓰레기매립장
				1E	1E	8,800	8,800	오수처리시설
				1F	1F	5,128	5,128	배수지
				1G	1G	119,342	119,342	도 로
	2	564,617	564,617	2A	2A	316,383	316,383	콘도미니엄
				2B	2B	16,997	16,997	펜션부지
				2C	2C	231,237	231,237	풀빌라
	3	43,764	43,764	3A	3A	25,966	25,966	일반상가
				3B	3B	6,782	6,782	클럽하우스
				3C	3C	1,983	1,983	휴게소
				3D	3D	733	733	간이휴게소, 스타트하우스, 화장실
				3E	3E	8,300	8,300	아울렛
	4	832,356	832,356	4A	4A	21,584	21,584	화훼공원
				4B	4B	154,625	154,625	야생동물방사공원
				4C	4C	4,118	4,118	야외놀이마당
				4D	4D	27,016	27,016	노인휴양소
				4E	4E	4,980	4,980	종합휴양센터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4G	4G	40,070	40,070	야생화단지
				4I	4I	184,951	184,951	관광농원
				4J	4J	72,629	72,629	약초원, 허브원
				4L	4L	58,630	58,630	텃밭
				4M	4M	158,955	158,955	캠핑장
				4N	4N	104,798	104,798	오토캠핑장
	5	777,250	777,250	5A	5A	44,882	44,882	루 지
				5B	5B	15,340	15,340	썰매장
				5C	5C	11,270	11,270	골프연습장
				5D	5D	543,920	543,920	골프코스시설
				5E	5E	500	500	경기진행실
				5F	5F	890	890	옥외수영장
				5H	5H	3,867	3,867	ZIP LINE
				5I	5I	156,581	156,581	모험놀이시설
	6	4,001,115	3,998,217.3	6A	6A	65,681	65,681	저 수 지
				6B	6B	5,920	5,920	환경교육관
				6C	6C	61,740	61,740	태양광발전설비
				6D	6D	5,029	5,029	저류지
				6E	6E	7,291	7,291	생태하천
				6F	6F	1,324,902	1,326,620.4	녹지
				6G	6G	2,530,552	2,525,935.9	원형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	1	1A, 1B, 1C, 1D, 1E, 1F, 1G	용도	권장용도	관리사무소, 관리본부, 주차장,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시설, 배수지, 도로	공공편익시설지구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5층이하	
–	2	2A, 2B	용도	권장용도	콘도미니엄, 펜션부지	숙박시설지구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10층이하	
–		2C	용도	권장용도	풀빌라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	
			높이		6층이하	
–	3	3A, 3B, 3C, 3D, 3E	용도	권장용도	일반상가, 클럽하우스, 썰매장 휴게소, 간이휴게소(스타트하우스 및 화장실), 아울렛	상가시설지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	
			높이		5층이하	
-	4	4A, 4B, 4C, 4D, 4E, 4G, 4I, 4J, 4L, 4M, 4N	용도	권장용도	화훼공원, 야생동물방사공원, 야외놀이마당, 노인휴양소, 종합휴양센터, 야생화단지, 관광농원, 약초,허브원, 텃밭, 캠핑장, 오토캠핑장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5층이하	
-	5	5A, 5B, 5C, 5D, 5E, 5F, 5H, 5I	용도	권장용도	루지, 썰매장, 골프연습장, 골프코스시설, 경기진행실, 옥외수영장, ZIP LINE, 모험놀이시설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5층이하	
-	6	6A, 6B, 6C, 6D,	용도	권장용도	저수지, 환경교육관, 태양광발전설비, 저류지, 생태하천, 녹지, 원형녹지	기타시설지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6E, 6F, 6G		불허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	
			높이		5층이하	

마. 기타시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보 행 동 선		• 차량동선으로 구획되는 각 지역내 시설간 연계도로는 보행동선으로 연계토록 하여 보차분리의 교통체계 구축 • 중심위락지역은 공용주차장에서 연계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하며 시설간 보행동선은 보행몰을 계획하여 연결토록 계획 • 골프장지역내 관리도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골프장 관리를 위한 서비스 도로로서 3~4m로 계획
차 량 동 선 및 주 차	차량동선	• 골프장 진입도로는 10m로 운영하며 기타 주요시설 및 숙박지역 단지내 도로는 4~8m로 계획 • 숙박지역 단지내 도로는 숙박시설의 Cluster형 배치에 따라 Loop형 도로를 적절히 이용하여 도로의 길이를 단축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계획 • 관광목장지역의 야생동물방사공원내 도로는 지형여건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공원내를 순환토록 하며 관광객 관람을 위한 서비스기능 및 관리도로로서 활용
	주 차 장	• 지구내에 설치되는 숙박 및 상가시설 등 개별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 숙박지역내 주차장은 지형 및 도로여건과 숙박시설의 Cluster형 배치에 따라 집단화된 공용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도로변 노상 주차장을 설치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0호

가음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가음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농업용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2.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이리 일원

나. 수혜면적 : 225.3ha

다. 사업개요

○ 인공습지 : 22,500㎡

- 인공습지 1개소, 양수시설 1개소, 가동보 1개소

- 관리도로 L=786.5m

○ 침강지1 : 20,500㎡

○ 침강지2 : 4,700㎡

○ 부대공사 1식

3. 사업비소요액 : 8,142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22년 6월 ~ 2024년 12월

5. 사 업 효 과 :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통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

6.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해당없음

8.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30-8178)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1호

경상북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고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경상북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경상북도 집합건물(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1부.

2. 경상북도 집합건물(상가) 표준관리규약 1부.

3. 경상북도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서식) 1부.

경상북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표준관리규약은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적용함.
2. **[표준관리규약의 적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규약의 설정·변경ㆍ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4. **[유의사항]** 집합건물법, 건축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5. **[종전 행위의 효력]** 단지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봄.

경 상 북 도 지 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71
제2조 【정의】 ····· 71
제3조 【적용범위】 ····· 72
제4조 【규약 등의 효력】 ····· 72
제5조 【규약의 설정·변경·폐기】 ····· 72
제6조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 72
제7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정 준수】 ····· 73
제8조 【규약의 보충】 ····· 73
제9조 【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 73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 73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 73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 74
제13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 74
제14조【전용사용권】 ····· 74
제15조【주차장의 사용】 ····· 74
제16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 75

제17조【층간소음】 ····· 75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8조【단지건물소유자 등의 책임】 ····· 75

제19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 76

제20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 76

제21조【전유부분의 출입】 ····· 76

제22조【보험계약의 체결】 ····· 76

제4장 단지관리단

제23조【단지관리단의 구성】 ····· 77

제24조【신고의무】 ····· 77

제25조【일부관리단】 ····· 77

제26조【단지관리단과 일부관리단과의 관계】 ····· 78

제27조【단지관리단의 사무소】 ····· 78

제28조【단지관리단의 권한】 ····· 78

제29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 ····· 79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 80

제31조【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등의 변경】 ····· 80

제32조【단지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 81

제33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81

제34조【기관 및 임원】 ·····82

제35조【직원 및 시설 등】 ·····82

제36조【직무교육 등】 ·····82

제37조【사무의 위탁】 ·····82

제38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83

제5장 단지관리단집회

제39조【단지관리단집회의 권한】 ·····83

제40조【소집권자 등】 ·····83

제41조【소집절차】 ·····84

제42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85

제43조【의결권】 ·····87

제44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87

제45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88

제4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88

제4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88

제48조【대리인에 의한 의견권 행사】 ·····88

제49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89

제50조【집회의 운영】 ·····89

제51조【의사록】 ····· 89

제6장 단지관리인 및 단지관리단 임원

제52조【단지관리인의 선임 등】 ····· 90
제53조【단지관리인의 해임청구】 ····· 90
제54조【단지관리인의 자격】 ····· 91
제55조【단지관리인의 직무대행】 ····· 91
제56조【단지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 92
제57조【단지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92
제58조【자문위원회 설치】 ····· 92
제59조【단지관리인의 보고의무】 ····· 93
제60조【단지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 94
제61조【단지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 94
제62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 94

제7장 단지관리위원회

제63조【단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95
제64조【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 95
제65조【단지관리위원회의 권한】 ····· 95
제66조【단지관리위원회의 소집】 ····· 96

제67조【단지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97

제68조【단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97

제69조【단지관리위원회 회의규칙】 ····· 98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98

제71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 99

제72조【업무】 ····· 99

제73조【운영 등】 ····· 100

제74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 100

제9장 회 계

제75조【단지관리단의 수입】 ····· 100

제76조【관리비】 ····· 101

제77조【수선적립금】 ····· 102

제78조【사용료】 ····· 103

제79조【잡수입】 ····· 103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 103

제81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 104

제82조【회계연도】 ····· 104

제83조【예산 및 결산】 ·····105

제84조【회계감사】 ·····105

제85조【회계장부 등】 ·····107

제86조【회계세칙】 ·····107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7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08

제11장 관 할

제88조【관할】 ·····108

〈〈부 칙〉〉

제1조【규약의 효력】 ·····108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1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단지 건물과 토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건물소유자”란 법 제51조에 따른 건물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단지건물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단지건물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6. “공용부분 등”이란 제5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7. “일부공용부분”이란 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8. “토지”란 법 제51조의 단지 내의 토지를 말한다.
9. “전용사용권”이란 토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단지건물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전용사용부분”이란 전용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말한다.
11. “관리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별관리단을 말한다.
12. “단지관리단”은 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단지관리단을 말한다.

13. “단지관리인”은 법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관리인을 말한다.

14. “단지관리위원회”는 법 제52조,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5. “단지관리위원”은 법 제52조,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단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16. 그밖에 용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토지,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 이라 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단지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단지건물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5조(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단지관리단집회에서 단지건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단지건물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단지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6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① 관리대상물 중 토지와 부속시설, 단지공용부분은 전체 단지건물소유자의 공유로 하고, 동의 공용부분은 그 동의 단지건물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단지건물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③ 단지건물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정 준수)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단지관리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과 체결한 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보충)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단지관리단 집회의 운영,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단지관리위원회의 운영, 회계 관리 및 주차장 이용·흡연·동물 관리 등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단지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 · 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단지건물소유자는 단지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거나 제2항의 결의를 받고자 할 경우, 단지건물소유자는 단지관리인 또는 단지관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 단지건물소유자는 다른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지관리인(단지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건물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단지건물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단지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토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전용사용권) ① 단지건물소유자는 별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주거용 건물 앞 토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② 주거용 건물 앞 토지와 옥상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는 단지건물소유자의 전용사용부분을 전용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의 사용) ①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지관리단은 특정 단지건물소유자 등과 주차장 사

용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는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단지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전유부분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단지관리단은 주차장 사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단지관리단은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①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단지건물소유자 등이나 제3자에게 토지와 공용부분 등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차인은 규약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층간소음) ①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단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8조(단지건물소유자 등의 책임)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①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단지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용사용부분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관리는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단지건물소유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 중 토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토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단지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현관문, 창틀, 창문 등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성능(방재, 방범,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단지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출입) ① 제19조제2항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20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지관리인(단지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마친 경우, 단지관리인(단지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지체없이 전유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단지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밖에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수령에 대하여 각 단지건물소유자 등을 대리한다.

③ 단지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개별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을 거부한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단지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한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를 구상할 수 있다.

제4장 단지관리단

제23조(단지관리단의 구성) ① 단지건물소유자들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단지건물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단지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단지건물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단지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의무) ① 단지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4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지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4-1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지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지건물소유자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25조(일부관리단) ①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단지건물소유자는 법 제51조제2항,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가진 관리단(이하, “일부관리단”이라 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에 일부관리단의 규약과 관리인, 구성원인 단지건물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단지관리단과 일부관리단의 관계) 일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규약과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단지관리단의 사무소) ① 단지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② 단지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단지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③ 단지관리인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단지 내의 적당한 장소에 단지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지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단지관리단의 권한) ① 단지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2. 제8조, 제17조, 제86조에 따른 세칙, 사용세칙, 회계세칙의 설정 · 변경 · 폐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
4.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및 주차장 관리비 · 사용료의 징수
5. 제16조에 따른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6. 제19조에 따른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7.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8.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9. 제24조에 따른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신고 접수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12. 제32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13.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

14. 제35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6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

15. 제37조, 제38조에 따른 단지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6. 제52조에 따른 단지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7.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의 징수·지출·적립

18. 제83조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19. 그밖에 단지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단지관리단은 법 제52조, 제2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 ①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단지관리인에게 미리 보존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존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① 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공용부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단지관리인은 미리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단지건물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계획서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단지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개경쟁 입찰 및 방법 등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제31조(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등의 변경의 경우, 단지관리인은 미리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2조(단지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단지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1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5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제77조제1항의 수선계획서

5. 제84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6. 관리위탁계약 등 단지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7.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8. 단지건물소유자명부

9. 그밖에 단지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단지건물소유자 등은 별표 6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별표 6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단지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관 및 임원) ①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집회와 단지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임원을 둘 수 있다.

1. 단지관리위원회
2. 부단지관리인 등 단지관리단 임원
3. 감사

② 단지관리단은 각 동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동별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직원 및 시설 등) ① 단지관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단지관리인과 단지관리위원, 단지관리단 임원, 감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단지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③ 단지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밖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직무교육 등)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인, 단지관리위원, 단지관리단 임원, 감사 및 단지관리단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사무의 위탁)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단지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

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37조에 따라 단지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단지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개경쟁 입찰 및 방법 등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제5장 단지관리단집회

제39조(단지관리단집회의 권한) 단지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단지관리인이나 단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40조(소집권자 등) ① 단지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단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단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단지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단지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단지건물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2.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단지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3.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단지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밝혀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단지관리인이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단지건물소유자, 단지관리위원,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단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단지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단지관리위원회는 단지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단지관리단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41조(소집절차) ①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단지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단지건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단지건물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단지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지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법 제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법 제50조제4항)인 경우
   (1) 의결이 필요한 이유
   (2) 공사계획, 각 단지건물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3)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4.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밖에 단지건물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5.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② 제1항의 통지서는 단지건물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다만, 단지건물소유자가 단지관리단에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③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단지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단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단지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단지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단지관리단집회는 단지건물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단지관리단집회는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단지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지관리단집회는 단지건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 · 폐지

3.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4.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5. 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6. 그밖에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지관리단집회는 단지건물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3. 그밖에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 단지관리단집회는 단지건물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 단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단지관리단집회에 출석한 단지건물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단지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⑤ 단지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한 결과 단지관리단집회에 출석한 단지건물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단지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41조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이하 ‘서면 · 전자적 방법 등’ 이라 함)에 의한 결의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병행하기로 한 경우 서면 ·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의결권) ① 각 단지건물소유자의 의결권은 별표 5와 같다.

② 1인의 단지건물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단지건물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단지건물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단지건물소유자로 본다.

④ 단지건물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단지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회계감사의 실시여부(법 제26조의2제2항), 단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단지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4제5항)에 관하여 단지건물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지건물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단지건물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단지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2. 단지건물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점유자가 사전에 단지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단지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회계감사의 실시여부, 단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단지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단지건물소유자가 단지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단지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단지건물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단지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단지건물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단지건물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단지건물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단지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인 또는 제40조제4항의 단지건물소유자, 단지관리위원,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지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제4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단지건물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는 단지관리단 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③ 단지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단지건물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단지건물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제49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법 또는 규약에 따라 단지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단지건물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단지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집회의 운영) ①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단지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단지건물소유자, 단지관리위원 또는 감사가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③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의사록) ①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참가자 명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4. 그밖에 단지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의사록은 단지관리단집회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단지건물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단지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단지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⑤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단지관리단집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단지관리인 및 단지관리단 임원

제52조(단지관리인의 선임 등) ①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단지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 임원과 감사,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단지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단지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지건물소유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단지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단지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그밖에 단지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4조(단지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단지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단지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단지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단지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부단지관리인이 없는 경우

제55조(단지관리인의 직무대행) 단지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부단지관리인이 있는 경우

제55조(단지관리인의 직무대행) ① 단지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지관리인이 단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단지관리인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단지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① 단지관리인은 단지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단지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7조(단지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단지관리인은 제28조제1항의 단지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② 단지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단지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단지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지관리인의 대표권은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단지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단지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단지관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계자문위원회
2. 법무자문위원회

3. 그밖에 단지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② 단지관리인은 단지관리단집회에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단지관리단집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단지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단지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단지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단지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토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단지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단지관리인은 위 제1항의 보고사항을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단지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지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관리인은 매월 1회 단지건물소유자에게 단지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

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단지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단지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단지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단지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① 단지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단지관리인은 후임 단지관리인에게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그밖에 단지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단지관리인이 단지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부단지관리인 등 단지관리단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1조(단지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① 부단지관리인 등 단지관리단임원과 감사는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감사는 단지건물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부단지관리인 등 단지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단지관리인 등 단지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주의의무, 보수에 관하여는 제56조를 준용한다.

※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2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① 감사는 단지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단지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단지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단지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단지관리인에게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단지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단지건물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단지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단지건물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단지관리위원회 (단지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3조(단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단지관리위원회는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단지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③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지관리위원회 의장이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단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64조(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65조(단지관리위원회의 권한) 단지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2. 제5조제2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를 위한 안건의 발의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에 관한 결의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 계획서에 대한 승인

5. 제37조에 따른 단지관리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결의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임시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7.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 청구

8. 제40조제5항에 따른 임시 단지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 검토 및 결과 보고

9. 제41조제5항에 따른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결의

10. 제55조에 따른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단지관리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11.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서에 대한 승인

12. 제8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추천 의뢰 결의

13. 그밖에 단지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6조(단지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단지관리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지관리위원회 의장은 단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단지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단지건물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는 경우

4. 감사가 제62조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제62조제3항의 법령 또는 규약 위

반사실 보고를 위해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단지관리위원회 의장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단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단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단지관리위원회는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제67조(단지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단지관리위원회의 의사는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단지관리위원회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5항에 따른 단지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단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단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1. 단지관리위원회 의장
2. 단지관리위원회 의장이 지정한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3.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② 단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단지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단지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별표 6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단지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단지관리위원회 회의규칙) 단지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청, 의견진술 등에 관한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은 단지건물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리단집회의 의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1. 단지관리인이 추천한자
2.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추천한 자
3. 단지건물소유자의 20분의 1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가 단지관리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추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단지관리인은 단지건물소유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지건물소유자 중에서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71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선출 또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단지건물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및 감사, 단지관리위원회 위원를 겸직할 수 없다.

제72조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단, 단지관리단집회(단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단지관리위원회)의 승인 필요]
2.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및 감사, 단지관리위원회 의장,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3.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및 감사, 단지관리위원회 의장,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 유무 확인
4.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투표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투·개표업무
5.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및 감사, 단지관리위원회 의장,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당선확인 및 당선증 교부

6. 단지관리인, 단지관리단 임원 및 감사, 단지관리위원회 의장, 단지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사퇴 접수·처리

7. 그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73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과반수 결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 또는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한 후 단지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은 단지관리인에게 별표 6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①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단지건물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9장 회 계

제75조(단지관리단의 수입) ① 단지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단지 수선적립금 및 각 동 수선적립금

3. 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각 동 수선적립금은 단지 수선적립금과 별도로 각 동마다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단지건물소유자는 단지관리단에 단지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단지건물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단지건물소유자가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단지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

제77조(수선적립금)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며,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② 단지 수선적립금은 토지, 부속시설 및 단지공용부분에 대한 단지건물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③ 각 동 수선적립금은 동의 공용부분에 대한 단지건물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④ 단지 수선적립금은 토지, 부속시설 및 단지공용부분과 관련하여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단지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

3. 제1호,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의 변제

⑤ 각 동 수선적립금은 각 동의 단지건물소유자들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각 동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해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사용료)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함)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함)

3. 가스사용료

②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단지건물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9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토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단지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단지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 단지관리단은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10일 전까지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 · 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② 관리비, 수선적립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른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단지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⑥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단지관리단은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1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단지건물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가산금 = 관리비 등 × 연체일 / 365 × 연체요율)

※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가산금 = 관리비 등 × 연체일 / 365 × 12%), 연체 1년 초과 시 연체요율 20%

제82조(회계연도) 단지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3조(예산 및 결산) ① 단지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단지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정기 단지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경우

제84조(회계감사) 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

제84조(회계감사)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85조(회계장부 등) ① 단지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인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지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단지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회계세칙) 단지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단지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7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지관리인 또는 단지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단지건물소유자는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장 관 할

제88조(관할)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 그밖에 단지관리단과 단지건물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단지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단지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관리대상물**

건물 명칭 등			
토지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건물	○동	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00층, 지하 00층 용도(공동주택) 연면적 ㎡ 건축면적 ㎡
		전유부분	총 호수 호 연면적 ㎡
	○동	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00층, 지하 00층 용도(공동주택) 연면적 ㎡ 건축면적 ㎡
		전유부분	총 호수 호 연면적 ㎡
	○동	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00층, 지하 00층 용도(공동주택) 연면적 ㎡ 건축면적 ㎡
		전유부분	총 호수 호 연면적 ㎡
부속 시설	담, 울타리,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쓰레기장, 배수로, 배수구, 외등(조명) 설비, 조경목, 게시판, 안내판, 놀이터, 관리사무실 등 단지 내에 존재하는 시설		

〈별표 2〉 **단지건물소유자의 공유지분율**

공유비율 / 주거용 단지 건물 번호		토지 및 부속시설	단지 공용부분	동의 공용부분
○동	○호실 ○호실 ·	○○○분의 ○○ ○○○분의 ○○ ·	○○○분의 ○○ ○○○분의 ○○ ·	○○○분의 ○○ ○○○분의 ○○ ·
	소계	○○○분의 ○○	○○○분의 ○○	○○○분의 ○○
○동	○호실 ○호실 ·	○○○분의 ○○ ○○○분의 ○○ ·	○○○분의 ○○ ○○○분의 ○○ ·	○○○분의 ○○ ○○○분의 ○○ ·
	소계	○○○분의 ○○	○○○분의 ○○	○○○분의 ○○
○동	○호실 ○호실 ·	○○○분의 ○○ ○○○분의 ○○ ·	○○○분의 ○○ ○○○분의 ○○ ·	○○○분의 ○○ ○○○분의 ○○ ·
	소계	○○○분의 ○○	○○○분의 ○○	○○○분의 ○○
합계		○○○분의 ○○	○○○분의 ○○	○○○분의 ○○

〈별표 3〉 **발코니 등의 전용사용부분 및 전용사용권자**

전용사용 부분 / 구분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주거용 건물 앞 토지	옥상
1. 위 치	각 공동주택에 접한 발코니, 베란다	각 공동주택에 부속하는 현관문, 창틀, 창문	별첨도와 같음	별첨도와 같음
2. 전용 사용권자	각 공동주택의 단지건물소유자 등	각 공동주택의 단지건물소유자 등	○동 ○호실의 단지건물소유자 등	○동 ○호실의 단지건물소유자 등

〈별표 4〉 **신고서(단지건물소유자)**

신 고 서 (단지건물소유자)

○○공동주택 단지관리단
단지관리인 ○○○ 귀하

○○공동주택의 단지건물소유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 래

1. 대상 공동주택 ○○동 ○○호

2. 단지건물소유권을 취득한 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3. 단지건물소유권을 상실한 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4. 단지건물소유권 변동일

5. 단지건물소유권 변동원인

※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서명:)

〈별표 4-1〉 **신고서(전세권자, 임차권자)**

신 고 서(임차인)

○○공동주택 단지관리단
단지관리인 ○○○ 귀하

○○공동주택의 전세권·임차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아 래

1. 대상 공동주택 ○○동 ○○호

2. 전세권·임차권을 취득/상실한 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3. 단지건물소유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4. 전세권·임차권 취득일/상실일

※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서명:)

〈별표 5〉

주거용 단지 건물 동호실	의결권 비율	주거용 단지 건물 동호실	의결권 비율
○동○호실 ○동○호실 ○동○호실 ○동○호실 ○동○호실 · · · · · · ·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 · · · · · · ·	○동○호실 ○동○호실 ○동○호실 ○동○호실 ○동○호실 · · · ·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 · · · · · ·
		합 계	○○○분의 ○○

〈별표 6〉

정보공개요청서

신 청 인	성명		신청 구분	□ 단지건물소유자 □ 점유자 □ 이해관계인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복사수수료 : 장당 흑백 50원, 칼라 200원 □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방대하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자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 · 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파트 단지관리단 단지관리인(또는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지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

경상북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표준관리규약은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적용함.
2. [표준관리규약의 적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3. [규약의 설정·변경ㆍ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4. [유의사항] 집합건물법, 건축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5. [종전 행위의 효력] 단지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봄.

경 상 북 도 지 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123
제2조 【정의】 ····· 123
제3조 【적용범위】 ····· 124
제4조 【규약 등의 효력】 ····· 124
제5조 【규약의 설정·변경·폐기】 ····· 124
제6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 124
제7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정 준수】 ····· 124
제8조 【규약의 보충】 ····· 124
제9조 【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 125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 125
제11조【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의 업종】 ····· 125
제12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 125
제13조【전유부분의 임대】 ····· 126
제14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 126
제15조【전용사용권】 ····· 126
제16조【주차장의 사용】 ····· 126

제17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127

제18조【층간소음】 ·····127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9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 ·····127

제20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128

제21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128

제22조【전유부분의 출입】 ·····128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128

제4장 관리단

제24조【관리단의 구성】 ·····129

제25조【신고의무】 ·····129

제26조【일부관리단】 ·····129

제27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과의 관계】 ·····130

제28조【관리단의 사무소】 ·····130

제29조【관리단의 권한】 ·····130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 ·····131

제31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131

제32조【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등의 변경】 ·····132

제33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133

제34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133

제35조【기관 및 임원】 ·····133

제36조【직원 및 시설 등】 ·····134

제37조【직무교육 등】 ·····134

제38조【사무의 위탁】 ·····134

제39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34

제5장 관리단집회

제40조【관리단집회의 권한】 ·····135

제41조【소집권자 등】 ·····135

제42조【소집절차】 ·····135

제43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137

제44조【의결권】 ·····138

제45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138

제46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139

제4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39

제48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0

제49조【대리인에 의한 의견권 행사】 ·····140

제50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140

제51조【집회의 운영】 ·····140

제52조【의사록】 ·····141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제53조【관리인의 선임 등】 ·····142

제54조【관리인의 해임청구】 ·····142

제55조【관리인의 자격】 ·····142

제56조【관리인의 직무대행】 ·····143

제57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143

제58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43

제59조【자문위원회 설치】 ·····144

제60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44

제61조【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145

제62조【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145

제63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146

제7장 관리위원회

제64조【관리위원회의 구성】 ·····146

제65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147

제66조【관리위원회의 권한】 ·····147

제67조【관리위원회의 소집】 ····· 148

제68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148

제69조【관리위원회의 운영】 ····· 149

제70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 149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49

제72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 150

제73조【업무】 ····· 150

제74조【운영 등】 ····· 151

제75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 151

제9장 회 계

제76조【관리단의 수입】 ····· 152

제77조【관리비】 ····· 152

제78조【수선적립금】 ····· 153

제79조【사용료】 ····· 154

제80조【잡수입】 ····· 154

제81조【관리비 등의 징수】 ····· 154

제82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 155

제83조【회계연도】 ·····155

제84조【예산 및 결산】 ·····155

제85조【회계감사】 ·····156

제86조【회계장부 등】 ·····158

제87조【회계세칙】 ·····158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8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59

제11장 관 할

제89조【관할】 ·····159

〈〈부 칙〉〉

제1조【규약의 효력】 ·····159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1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상가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의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6. “공용부분 등”이란 제5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7. “일부공용부분”이란 법 제10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8. “대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9. “전용사용권”이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전용사용부분”이란 전용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말한다.
11. “관리단”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2. “관리인”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13. “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4. “관리위원”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15. 그밖에 용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대지,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 이라 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5조(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①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③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정 준수)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주민과 체결한 협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보충)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운영,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운영,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 · 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구분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전유부분의 업종) ① 관리단은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약으로 정한 전유부분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인은 제2항의 승인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때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유부분의 업종 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거나 제2항의 결의를 받고자 할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입

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전유부분의 임대) 구분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구분소유자 등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전용사용권) ① 구분소유자는 별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②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전용사용부분을 전용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주차장의 사용) ①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특정 구분소유자 등과 주차장 사용에 관

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 등이 전유부분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관리단은 주차장 사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단은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구분소유자 등이나 제3자에게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차인은 규약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층간소음) ① 구분소유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9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 구분소유자 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①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용사용부분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관리는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 중 대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대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현관문, 창틀, 창문 등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성능(방재, 방범,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전유부분의 출입) ① 제19조제2항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20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분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마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지체없이 전유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밖에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수령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 등을 대리한다.

③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개별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을 거부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를 구상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단

제24조(관리단의 구성) ①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신고의무) 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4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4-1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26조(일부관리단) ①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가진 관리단(이하, “일부관리단”이라 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부관리단은 관리단에 일부관리단의 규약과 관리인, 구성원인 구분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의 관계) 일부관리단은 관리단의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관리단의 사무소)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2. 제8조, 제17조, 제83조에 따른 세칙, 사용세칙, 회계세칙의 설정 · 변경 · 폐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의 징수
4.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및 주차장 관리비 · 사용료의 징수
5.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6.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7.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8.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9. 제24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신고 접수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12. 제31조에 따른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13.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

14. 제34조에 따른 직원의 고용 및 제35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

15.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6. 제51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7. 제75조제2항, 제76조, 제77조에 따른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의 징수ㆍ지출ㆍ적립

18.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19. 제81조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20. 제83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의 실시

21.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단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 ①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미리 보존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존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① 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공용부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인은 미리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위

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구분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계획서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개경쟁 입찰 및 방법 등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제32조(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 등의 변경의 경우, 단지관리인은 미리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3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기관 및 임원)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2. 부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

3. 감사

제36조(직원 및 시설 등) ① 관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인과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감사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③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밖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직무교육 등) 관리단은 관리인,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감사 및 관리단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사무의 위탁)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36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개경쟁 입찰 및 방법 등은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른다.

제5장 관리단집회

제40조(관리단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41조(소집권자 등)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3.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42조(소집절차)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법 제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법 제50조제4항)인 경우
   (1) 의결이 필요한 이유
   (2) 공사계획, 각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3)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4.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밖에 구분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5.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③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4제5항)과 관련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 · 폐지
3.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4.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5. 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6.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4.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하여야 한다.

⑤ 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이하 '서면·전자적 방법 등'이라 함)에 의한 결의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병행하기로 한 경우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별표 5와 같다.

②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5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4제5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2.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점유자가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리인 또는 제39조제4항의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제48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는 관리단 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제50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집회의 운영)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또는 감사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③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참가자 명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찬반의 의사
5. 그밖에 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제53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 임원과 감사,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4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그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5조(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부관리인이 없는 경우

제56조(관리인의 직무대행)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부관리인이 있는 경우

제56조(관리인의 직무대행) ①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관리인이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관리인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① 관리인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8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계자문위원회
2. 법무자문위원회
3. 그밖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관리단집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위 제1항의 보고사항을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가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매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에게 제32조제1항의 자료와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부관리인 등 관리단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2조(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① 부관리인 등 관리단임원과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부관리인 등 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부관리인 등 관리단임원과 감사의 주의의무, 보수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 감사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3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① 감사는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함)

제64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의장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65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 관리단 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66조(관리위원회의 권한)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2. 제5조제2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를 위한 안건의 발의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에 관한 결의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 계획서에 대한 승인
5. 제36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결의
6.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7.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 단지관리단집회의 소집 청구
8. 제39조제5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 검토 및 결과 보고
9. 제41조제5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결의
10. 제5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관리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11.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서에 대한 승인
12.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추천 의뢰 결의
13.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7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는 경우
4. 감사가 제61조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제61조제3항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실 보고를 위해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 의장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제68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관리위원회는 제6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 의장

2. 관리위원회 의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청, 의견진술 등에 관한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리단집회의 의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1. 관리인이 추천한 자

2. 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추천한 자

3. 구분소유자의 20분의 1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추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72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선출 또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관리인,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를 겸직할 수 없다.

제73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단,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인 필요]
2.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의장,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3.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의장, 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 유무 확인
4.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투표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투·개표업무
5.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의장, 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당선확인 및 당선증 교부
6. 관리인, 관리단 임원 및 감사, 관리위원회 의장, 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사퇴 접수·처리
7. 그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74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과반수 결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 또는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한 후 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① 선거관리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구분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9장 회 계

제76조(관리단의 수입)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수선적립금
3. 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7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상가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

제78조(수선적립금)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며,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② 수선적립금은 대지, 공용부분 등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③ 수선적립금은 대지, 공용부분 등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단이 스스로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

3. 제1호,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의 변제

제79조(사용료)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함)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함)

3. 가스사용료

②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0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81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분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 · 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② 관리비, 수선적립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른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⑥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단지관리단은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2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가산금 = 관리비 등 × 연체일 / 365 × 연체요율)

※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가산금 = 관리비 등 × 연체일 / 365 × 15%), 연체 1년 초과 시 연체요율 20%

제83조(회계연도) 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예산 및 결산) ① 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

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경우

제85조(회계감사) 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경우

제85조(회계감사)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며,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86조(회계장부 등) ①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회계세칙)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8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분소유자 등이 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장 관 할

제89조(관할)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 그밖에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상가 집합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관리대상물**

건물 명칭 등		00도 00시 00동 1번지 소재 00 상가
대지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건물	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00층, 지하 00층 용도(상업용) 연면적 ㎡ 건축면적 ㎡
	전유부분	총 호수 호 연면적 ㎡
부속 시설	담, 울타리,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쓰레기장, 배수로, 배수구, 외등(조명) 설비, 조경목, 게시판, 안내판, 관리사무실 등 건물에 존재하는 시설	

〈별표 2〉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율**

공유비율 / 상가 건물 번호	대지 및 부속시설	공용부분
○호실	○○○분의 ○○	○○○분의 ○○
○호실	○○○분의 ○○	○○○분의 ○○
○호실	○○○분의 ○○	○○○분의 ○○
○호실	○○○분의 ○○	○○○분의 ○○
○호실	○○○분의 ○○	○○○분의 ○○
·	·	·
·	·	·
·	·	·
합계	○○○분의 ○○	○○○분의 ○○

〈별표 3〉 **발코니 등의 전용사용부분 및 전용사용권자**

전용사용부분 / 구분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	옥상
1. 위 치	상가에 접한 발코니, 베란다	상가에 부속하는 현관문, 창틀, 창문	별첨도와 같음	별첨도와 같음
2. 전용 사용권자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	○호 상가 구분소유자 등	○호 상가 구분소유자 등

〈별표 4〉 **신고서(구분소유자)**

신 고 서 (구분소유자)

○○상가 관리단
관리인 ○○○ 귀하

○○상가의 구분소유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상가 ○○호

2.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3.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4. 구분소유권 변동일

5. 구분소유권 변동원인

※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서명:)

〈별표 4-1〉 **신고서(전세권자, 임차권자)**

신 고 서 (임차인)

○○상가 관리단
관리인 ○○○ 귀하

○○상가의 전세권·임차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상가 ○○호

2. 전세권·임차권을 취득/상실한 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3. 구분소유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4. 전세권·임차권 취득일/상실일

※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퇴거한 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 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서명:)

〈별표 5〉

상가 호실	의결권 비율	상가 호실	의결권 비율
○○호실 ○○호실 ○○호실 ○○호실 ○○호실 · · · · · · ·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 · · · · · · ·	○○호실 ○○호실 ○○호실 ○○호실 ○○호실 · · · · ·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분의 ○○ · · · · · ·
		합 계	○○○분의 ○○

〈별표 6〉

정보공개요청서

신 청 인	성명		신청 구분	□ 구분소유자 □ 점유자 □ 이해관계인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복사수수료 : 장당 흑백 50원, 칼라 200원 □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방대하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자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 · 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가 관리단 관리인(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

경상북도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치			면적	㎡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상 층
	건폐율	%	용적율	%		지하 층

조정 신청 내용	
조정 신청 취지 및 이유	
피해예상금액	
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중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2호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297호(2021.09.13.)로 고시한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편입토지의 지적측량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변경없음)

가. 사 업 명 :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일원

다. 수혜면적 : 33.7ha (신규 33.7ha, 기설 - ha)

라. 사 업 량

○ 수원공 : 저수지 1개소 (총저수량 20.8만㎥, 유효저수량 20.5만㎥)

- 제방 : 신설 L=110.7m, H=22.8m

- 물넘이방수로 : 물넘이 L=12.0m, 방수로L=88.0m(평균폭=4.5m)

- 복 통 : 강관 D=1.5m, L=112.2m

- 사 통 : 3공(D=300㎜)

- 이설도로 : 2조 660.8m, B=3.5~4.0m(Con'c포장, B=2.5~3.0m)

3. 사 업 비(변경없음) : 6,485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변경없음) 2021. 1. 4. ~ 2024. 12. 31.

5. 사업의 효과(변경없음) : 수자원 확보, 영농환경 개선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청송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청송 · 영양지사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8.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청송군 안전재난건설과(☎054-870-6365), 한국농어촌공사 청송 · 영양지사(☎054-870-053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합계							59,056													61,226						
1	청송	현동	도평	13	전	2,853	411	정원호	현동면 도평동 500					청송	현동	도평	13-1	전	2,853	482	청송군					
2	청송	현동	도평	42	임	1,223	119	이무술						청송	현동	도평	42-1	임	190	190	이무술					분할 측량 미등기
3	청송	현동	도평	44	전	2,608	2,608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44	전	2,608	2,608	청송군					
4	청송	현동	도평	45	전	314	314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45	전	314	314	청송군					
5	청송	현동	도평	46	임	982	982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46	임	982	982	청송군					
6	청송	현동	도평	51	답	2,126	2,126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1	답	2,126	2,126	청송군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7	청송	현동	도평	52	전	2,119	2,119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2	전	2,119	2,119	청송군					
8	청송	현동	도평	53	임	493	493	이경수						청송	현동	도평	53	임	493	493	청송군					
9	청송	현동	도평	54	답	1,341	1,341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4	답	1,341	1,341	청송군					
10	청송	현동	도평	54-1	답	173	173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4-1	답	173	173	청송군					
11	청송	현동	도평	55	대	660	660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5	대	660	660	청송군					
12	청송	현동	도평	55-1	전	29	29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5-1	전	29	29	청송군					
13	청송	현동	도평	55-2	전	6,273	6,273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5-2	전	6,273	6,273	청송군					
14	청송	현동	도평	56	전	486	486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6	전	486	486	청송군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5	청송	현동	도평	57	임	757	757	윤덕언						청송	현동	도평	57	임	757	757	청송군					
16	청송	현동	도평	58-3	답	78	78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8-3	답	78	78	청송군					
17	청송	현동	도평	58-4	답	147	147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8-4	답	147	147	청송군					
18	청송	현동	도평	59	과	6,961	6,961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9	과	6,961	6,961	청송군					
19	청송	현동	도평	59-1	답	134	134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59-1	답	134	134	청송군					
20	청송	현동	도평	60	임	499	499	오원석						청송	현동	도평	60	임	499	499	청송군					
21	청송	현동	도평	66	임	704	704	김용이						청송	현동	도평	66	임	704	704	청송군					
22	청송	현동	도평	68	전	1,709	1,709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68	전	1,709	1,709	청송군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23	청송	현동	도평	69	전	1,967	1,967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69	전	1,967	1,967	청송군					
24	청송	현동	도평	70	전	298	298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0	전	298	298	청송군					
25	청송	현동	도평	71	답	205	205	김삭불이	현동면 도평동 81					청송	현동	도평	71	답	205	205	청송군					
26	청송	현동	도평	72	임	53	53	김용이						청송	현동	도평	72	임	53	53	청송군					
27	청송	현동	도평	73	답	248	248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3	답	248	248	청송군					
28	청송	현동	도평	74	대	321	321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4	대	321	321	청송군					
29	청송	현동	도평	75	대	723	723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5	대	723	723	청송군					
30	청송	현동	도평	75-1	대	361	361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5-1	대	361	361	청송군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31	청송	현동	도평	76	답	79	79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6	답	79	79	청송군					
32	청송	현동	도평	77	대	253	253	이경수						청송	현동	도평	77	대	253	253	청송군					
33	청송	현동	도평	77-1	대	246	246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7-1	대	246	246	청송군					
34	청송	현동	도평	78	대	350	350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8	대	350	350	청송군					
35	청송	현동	도평	79	전	3,795	3,795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79	전	3,795	3,795	청송군					
36	청송	현동	도평	81	전	4,053	207	정진영	대구시 동구 반야월 북로53 길 10, 103동 403호 (신서동,					청송	현동	도평	81-2	전	271	271	청송군					분할 측량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보라 맨션)																	
37	청송	현동	도평	81-1	전	231	180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81-1	전	231	231	청송군					
38	청송	현동	도평	237-1	전	1,656	122	윤형구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256					청송	현동	도평	237-3	전	123	123	청송군					분할 측량
39	청송	현동	도평	835	구	17,042	6,106	국(농수산부)						청송	현동	도평	835	구	17,042	6,106	국(농수산부)					
40	청송	현동	도평	835-1	구	22	22	국(농수산부)						청송	현동	도평	835-1	구	22	22	국(농수산부)					
41	청송	현동	도평	836	도	1,025	741	국(국토교통부)						청송	현동	도평	836	도	1,025	741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42	청송	현동	도평	839-173	천	60,262	1,056	국(국토교통부)						청송	현동	도평	839-173	천	60,262	1,056	국(국토교통부)					
43	청송	현동	도평	840	도	985	901	국(국토교통부)						청송	현동	도평	840	도	985	901	국(국토교통부)					
44	청송	현동	도평	841	구	691	275	국(농수산부)						청송	현동	도평	841	구	691	275	국(농수산부)					
45	청송	현동	도평	842	도	1,088	109	국(국토교통부)						청송	현동	도평	842	도	1,088	109	국(국토교통부)					
46	청송	현동	도평	산95	임	41,256	3,136	조경애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70,					청송	현동	도평	산95-1	임	3,855	3,855	청송군					분할 측량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05동 1107호 (구암동, 금빛타운)																	
47	청송	현동	도평	산96	임	65,058	580	국 (산림청)						청송	현동	도평	산96 -1	임	457	457	청송군					분할 측량
														청송	현동	도평	산96 -2	임	123	123	청송군					분할 측량
48	청송	현동	도평	산102	임	193,983	143	국 (산림청)						청송	현동	도평	산102 -1	임	143	143	청송군					분할 측량
49	청송	현동	도평	산108	임	49,190	3,568	신순남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193, 701호					청송	현동	도평	산108 -1	임	4,275	4,275	청송군					분할 측량

일련번호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솔기아 파트)																	
50	청송	현동	도평	산109	임	73,388	3,673	청송군						청송	현동	도평	산109-2	임	4,159	4,159	청송군					분할 측량
51	청송	현동	도평	산110-1	임	265,390	204	국(산림청)						청송	현동	도평	산110-8	임	204	204	청송군					분할 측량
52	청송	현동	도평	산138	구	231	11	국(농수산부)						청송	현동	도평	산138	구	231	11	국(농수산부)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3호

중화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중화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저수지 준설로 저수량 증대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식량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중화	고령	대가야	중화	164.0	준설 12,150㎥	160	2022.10. ~ 2022.12.31.	

3.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054-950-073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184호

횡계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횡계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저수지 준설로 저수량 증대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식량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횡계	영천	화북	횡계	115.0	준설5,000㎥	90	2022. 6. ~ 2022.12.31.	

3.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054-339-5064)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99호

주실령터널 건설공사 기본설계(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지방도915호선 주실령터널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 주실령터널 건설공사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 춘양면 서벽리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2.5km, 폭원 9.5m

○ 설계속도 : 40km/h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공사의 필요성

○ 지방도 915호선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 춘양면 서벽리를 연결하는 주실령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선형개량 및 터널 설치를 통하여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여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의 효과

○ 위험도로의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로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선형불량 구간 개선을 통한 관광지(백두대간 수목원 등) 수요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사기간

○ 설계기간 : 2022년 01월 ~ 2023년 12월

○ 공사기간 : 2024년 ~ 2029년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 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이후	비 고
290	3	7	280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계획,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2년 6월 23일 ~ 2022년 7월 12일(20일간)

○ 공람장소 : 경북도청 도로철도과, 봉화군 안전건설과, 물야면사무소, 춘양면사무소

7.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6일(수) 10:00, 물야면 오전2리 마을회관

○ 2022년 7월 6일(수) 14:00, 춘양면 서벽권역 도농교류센터

8.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도로철도과(☎ 054-880-3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04호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업체에 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2.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7. (14일간)

3. 공고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일반 측량업 (06052217)	㈜한길 엔지니어링 (임*희)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18길 24, 201호(삼북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5. 안내사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6. 게시장소 : 경상북도보 및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7. 문의사항 : 경북도청 토지정보과 측량업 담당자 (054-880-4057)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06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양수인가 신청내용**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설 계 업 등록번호	경북 제2011-6470000-85-13-00002호 (前 제 경북5-55호)	
감 리 업 등록번호	경북 제2009-6470000-86-22-00010호 (前 제 경북(전문)2-106호)	
업 체 명	정도이엔씨	주식회사 대건종합기술
대 표 자	정칠교	정칠교, 김지숙
소 재 지	경북 경산시 옥실길 6-9, 1층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12길 17, 2층
양수예정일	2022년 6월(양도·양수계약 : ’22. 5. 11.)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07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노 선 명	국지도20호선
공사의 종류	국지도 이설(L=647.0m, B=18.5m, 회전교차로 2개소)		
공 사 구 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341-1번지 일원		
시 행 장 소	상 동		
목적 및 사유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제2공구) 북포항나들목 설치에 따른 국지도 이설(회전교차로 2개소)		
착수예정일	2022년 6월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 공 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1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448 (828-88-02234)	주식회사 다대통신 (김태겸)	경북 칠곡군 지천면 상지2길 5	2022.6.21.

끝.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2-1211호

2022년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 목 : 2022년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7.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054-850-33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년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내역

위치							사방사업 실행		토지사용내역		소유자•납세자		비고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사업명	면적(㎡)	사용기간	사용자재	성명	주소	
1	영양군	청기면	사리	산91	임야	1,983	사방댐 설치	20	2022.7.~2022.12.	돌, 잔디 등	이질화	주소 및 납세자 불명	
2	영양군	청기면	사리	117	임야	218	사방댐 설치	11	2022.7.~2022.12.	돌, 잔디 등	구석로	주소 및 납세자 불명	

◈◈

시 군

고 시

안동시 고시 제2022-1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안 동 시 장

1. **사업명칭** : 안동시 정하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더유은 대표 강유은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33-6, 2층(운암동)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45-6번지 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 주택	○ 대지면적 기정 : 3,851㎡ 변경 : 3,891.4㎡ ○ 건축연면적 : 10,750.0947㎡ ○ 건설규모 : 아파트 14층, 2동, 81세대 외 부대시설	14,290,835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0. 09 .01. ~ 2022. 06. 2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변경)허가

나.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허가

7. 사업변경승인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명 칭	안동시 정하동 아파트	좌 동	
사업계획승인	2017. 04. 28.	좌 동	
착공(예정)일자	2020. 09. 01.	좌 동	
대지위치	안동시 정하동 645-6번지 외 3필지	좌 동	
사업주체	주식회사 더유은 대표 강유은	좌 동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 공 자	주식회사 거송건설, 계원토건 주식회사		좌 동		
대지면적	3,851㎡		**3,891.4㎡**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건축면적	893.1652㎡		좌 동		
연 면 적	10,750.0947㎡		좌 동		
건 폐 율	23.19%		**22.95%**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
용 적 률	211.47%		**209.28%**		**대지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
주택형별 (전용) 및 세대수	72.9193형	52세대	좌 동	좌 동	민간임대
	84.9846형	29세대	좌 동	좌 동	민간임대
	계----------81세대		좌 동		
사 업 비	14,290,835천원		좌 동		
사용검사예정일	허가일로부터 ~ 2022. 06. 27.		좌 동		
주차대수	102대		좌 동		
층 수	지하2층, 지상14층~15층		좌 동		
동수(주/부)	2/2		좌 동		
기 타	- 시설물 일부변경 - 공용부 일부 마감변경 - 설비용량 및 배관 일부변경				

8. 관계서류(세부변경사항)는 안동시청 건축과(☎054-840-54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안동시 고시 제2022-10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용상소로(2-4)]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113호(2020.06.01.) 및 제2021-307호(2021.10.22.)로 실시계획 인가된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용상소로(2-4)]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종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용상소로(2-4)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116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250.0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안동시장

○ 주 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기 정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6.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유

•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유자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용상	1078-116	1078-116	전	241	123	공	안동시			변경없음
2	용상	1078-155	1078-155	전	288	14	공	안동시			변경없음
~~3~~	~~용상~~	~~1078-126~~	~~1078-126~~	~~장~~	~~98~~	~~98~~	~~안동시 남부동 101-3~~	~~임○규~~			~~카정~~
3	**용상**	**1078-126**	**1078-126**	**장**	**98**	**98**	**공**	**안동시**			**변경**
4	용상	1078-189	1078-189	대	36	36	공	안동시			변경없음
5	용상	1078-28	1078-28	도	1,226	221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없음
6	용상	1078-99	1078-99	구	4,750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없음
7	용상	1078-22	1078-22	도	624	624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없음
8	용상	1078-127	1078-200	전	514	65	안동시 안흥동 315-16	유○규	압류	안동시	변경없음
~~9~~	~~용상~~	~~1078-64~~	~~1078-199~~	~~전~~	~~165~~	~~37~~	~~안동시 용상동 535-48~~	~~손○자~~			~~카정~~
9	**용상**	**1078-64**	**1078-199**	**전**	**165**	**37**	**공**	**안동시**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0~~	~~용상~~	~~1078-61~~	~~1078-198~~	~~전~~	~~307~~	~~8~~	~~안동시 마들2길 35-10 (용상동)~~	~~김○자~~	~~근저당~~	~~안동농업협동조합~~	~~기정~~
10	용상	1078-61	1078-198	전	307	8	공	안동시			변경
~~11~~	~~용상~~	~~1078-26~~	~~1078-197~~	~~대~~	~~159~~	~~34~~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6길46 (용상동)~~	~~전○자~~			~~기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83-4~~	~~전○자~~			~~기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73, 108동 404호 (우만동, 월드베르타 앙아파트)~~	~~전○규~~			~~기정~~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87~~	~~전○규~~	~~압류~~	~~경주시~~	~~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26~~	~~전○규~~			~~기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98, 214호 (괴정동, 천어하늘정원아파트)~~	~~주식회사 일운~~			~~기정~~
11	용상	1078-26	1078-197	대	159	34	공	안동시			변경
~~12~~	~~용상~~	~~1078-140~~	~~1078-140~~	~~장~~	~~60~~	~~60~~	~~안동시 용상동 1078-25~~	~~이○자~~			~~기정~~
12	용상	1078-140	1078-140	장	60	60	공	안동시			변경
13	용상	1078-159	1078-159	장	21	21	공	안동시			변경 없음
14	용상	1078-154	1078-154	도	591	89	공	안동시			변경 없음
15	용상	10787-152	10787-152	도	116	54	공	안동시			변경 없음
~~16~~	~~용상~~	~~1084-19~~	~~1084-19~~	~~전~~	~~5~~	~~5~~	~~안동시 마들3길 22-1 (용상동)~~	~~김○석~~			~~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6	**용상**	1084-19	1084-19	**전**	5	5	**공**	**안동시**			**변경**
~~17~~	~~용상~~	~~1084-17~~	~~1084-17~~	~~전~~	~~52~~	~~52~~	~~안동시 용상동 1084-1~~	~~김○호~~			~~취소~~
17	**용상**	1084-17	1084-17	**전**	52	52	**공**	**안동시**			**변경**
18	용상	1084-16	1084-16	도	83	83	안동시 용상동 1015-6	주식회사 대성건설	압류	안동시	**변경**
									~~근저당~~	~~주식회사 안동상호신용금고~~	
									파산관제인	**이상혁 변호사**	
19	용상	1084-3	1084-22	전	3,342	143	안동시 북문옥정길 116 (옥정동)	권○룡	근저당	안동농업협동조합	변경 없음
~~20~~	~~용상~~	~~1084-10~~	~~1084-10~~	~~전~~	~~132~~	~~132~~	~~국~~	~~재정경제원~~			~~취소~~
20	**용상**	1084-10	1084-10	**전**	132	132	**공**	**안동시**			**변경**
21	용상	1084-5	1084-23	전	1,348	60	안동시 용상동 1586 심아빌라 202호	권○진			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1~~	~~안동~~	~~용상~~	~~1078-26~~	~~주택~~	~~콘크리트~~	~~14~~	㎡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6길46 (용상동)~~	~~전○자~~	~~거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83-4~~	~~전○자~~	
				~~창고~~	~~콘크리트~~	~~5.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73, 108동 404호(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규~~	~~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용호로 6, 301동 609호(평광현대 아파트)~~	~~전○자~~	
				~~담장~~	~~벽돌~~	~~1.0~~	~~m~~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87~~	~~전○규~~	~~거정~~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26~~	~~전○규~~	
1	안동	용상	1078-26	주택	블록조스레트	13.2	㎡	공	안동시	변경
				보일러실	블록조스레트	2.38	㎡			
				가작	블록조함석	3.22	㎡			
				바닥	콘크리트	8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대문	철제, 문주포함	1	식			
				담장	블록	3.6	㎡			
~~2~~	~~안동~~	~~용상~~	~~1078-64~~	~~주택~~	~~콘크리트~~	~~12~~	~~㎡~~	~~안동시 용상동 535-48~~	~~손○자~~	~~거정~~
				~~담장~~	~~벽~~	~~2.1~~	~~m~~			
2	안동	용상	1078-64	창고	블록조판넬	15.75	㎡	공	안동시	변경
				바닥	콘크리트	10	㎡			
				담장	블록	7.2	㎡			
				대문	철제, 문주포함	1	식			
3	안동	용상	1078-127	뽕나무	R20	1	주	안동시 용상동 535-48	손○자	변경
				사철나무	R20	1	주			
				다년생초화류		1	군			
4	안동	용상	1078-140	바닥	콘크리트	12	㎡	공	안동시	변경
5	안동	용상	1078-186	화단		1	식	공	안동시	변경
				다년생초화류		1	군			
6	안동	용상	1084-19	바닥	콘크리트	5	㎡	공	안동시	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7	안동	용상	1084-17	바닥	콘크리트	52	㎡	공	안동시	변경
8	안동	용상	1084-16	문주		1	식	안동시 용상동 1015-6	주식회사 대성건설	변경
				바닥	콘크리트	83	㎡			
9	안동	용상	1084-3	휀스	EGI, 출입문포함	33	m	안동시 북문옥정길 116 (옥정동)	권○룡	변경
10	안동	용상	1084-4	정비고	철파이프조 판넬	7	㎡	안동시 용상동 1586 심아빌라 202호	권○진	변경
				부속창고	철파이프조 강판	2.5	㎡			
				휀스	EGI	36	m			
11	안동	용상	1084-5	대문	철파이프	1	식	안동시 용상동 1586 심아빌라 202호	권○진	변경
				간판		3	식			
				은행나무	R50	2	주			
				바닥	아스콘	20	㎡			

구미시 고시 제2022-140호

구미 공원조성계획(44호 근린공원, 174호 소공원) 결정 고시

구미 근린공원(44호) 및 소공원(174호)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미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1) 건　　명 : 44호 근린공원, 174호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2) 위　　치

○ 44호 근린공원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0-3번지 일원

○ 174호 소공원 :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2-4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4	꽃동산A	근린공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0-3번지 일원	29,921	-	29,921	구미시 고시 제2021-242호 (21.11.29)	
신설	174	꽃동산B	소공원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2-4번지 일원	9,182	-	9,182	구미시 고시 제2021-242호 (21.11.29)	

○ 4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총괄조서

구분		주요시설	면적(㎡)	시설율 (%)	건축 바닥면적 (㎡)	비고
총계			29,921	100		
시설 종류	소계		2,126	7.1		
	도로 및 광장	도로	2,061	6.9		
	휴양시설	쉼터, 건강정원	65	0.2		
녹지 및 기타			27,795	92.9		

○ 174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총괄조서

구분		주요시설	면적(㎡)	시설율 (%)	건축 바닥면적 (㎡)	비고
총계			9,182	100		
시설 종류	소계		612	6.7		
	도로 및 광장	도로	479	5.2		
	조경시설	진입데크	117	1.3		
	휴양시설	쉼터	16	0.2		
녹지 및 기타			8,570	93.3		

4 4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세부시설 조서

○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기정	변경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2	29,921			시설율 7.1%
도로 및 광장	소계				2.061			
	도		도로		2.061			산책로
조경 시설	소계			7				
	A		벤치	7	–			
휴양 시설	소계				65			
	①-1		휴게쉼터-1		14			
	①-2		휴게쉼터-2		18			

시설 구분	기정	변경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①-3		휴게쉼터-3		13			
	①-4		건강정원		20			
운동 시설	소계			2				
	B		체력단련시설	2				
관리 시설	소계			3				
	C		공원안내판	3				
녹지 및 기타	소계				27,795			
	-		녹지		27,79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891	2,061				
신설	소로	3	1	3.0	483	1,449	산책로	원호리 산42-4	원호리 401	
신설	소로	3	2	1.5	50	75	산책로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소로 3-1	
신설	소로	3	3	1.5	86	129	산책로	도로	소로 3-1	
신설	소로	3	4	1.5	142	213	산책로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소로 3-1	
신설	소로	3	5	1.5	71	106	산책로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소로 3-1	
신설	소로	3	6	1.5	59	89	산책로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소로 3-1	

5 174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세부시설 조서

○ 세부시설 조서

시설구분	기정	변경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	9,182			시설율 6.7%
도로 및 광장	소계				479			
	도		도로		479			산책로
조경시설	소계			3	117			
	①		진입데크		117			
	A		벤치	3	–			
휴양시설	소계				16			
	②		휴게쉼터		16			
관리시설	소계			1				
	B		공원안내판	1	–			
녹지 및 기타	소계				8,570			
	–		녹지		8,57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60	479				
신설	소로	3	1	3.0	160	479	산책로	원호리 401	원호리 산48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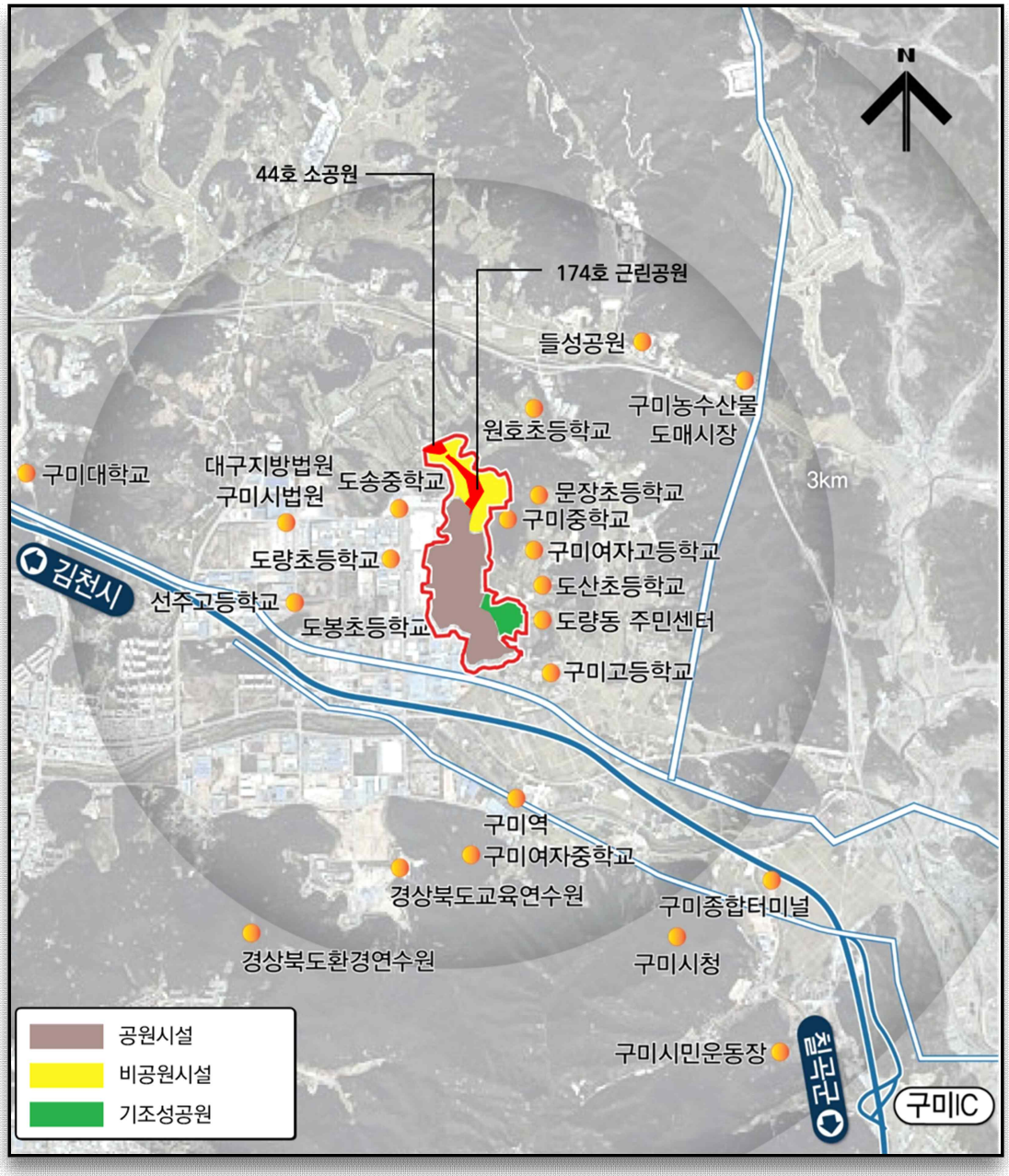
N
44호 소공원
174호 근린공원
들성공원
구미농수산물
도매시장
원호초등학교
구미대학교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도송중학교
문장초등학교
3km
구미중학교
구미여자고등학교
도량초등학교
김천시
도산초등학교
선주고등학교
도량동 주민센터
도봉초등학교
구미고등학교
구미역
구미여자중학교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구미종합터미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구미시청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기조성공원
구미시민운동장
대구
구미IC

위 성 사 진

6. 공원 별 편입토지조서 : 별첨 1

7. 공원조성계획 결정 도면 등 : 게재 생략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관계 도서는 구미시청 공원녹지과(054-480-5562)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1

편 입 토 지 조 서

구 미 시

1. 총괄표

1-1. 지목별 총괄표

가) 44호 근린공원 지목별 총괄표

시설	구분	합계	임야	전	구거	도로
44호 근린공원 (꽃동산A)	필지수	15	11	3	-	1
	면적(㎡)	29,921	28,135	1,679	-	107
	구성비(%)	100.0	94.0	5.6	-	0.4

나) 174호 소공원 지목별 총괄표

시설	구분	합계	임야	전	구거	도로
174호 소공원 (꽃동산B)	필지수	7	4	1	1	1
	면적(㎡)	9,182	8,449	14	46	673
	구성비(%)	100.0	92.0	0.2	0.5	7.3

- 이 하 여 백 -

1-2. 소유자별 총괄표

가) 44호 근린공원 소유자별 총괄표

시설	구분	합계	사유지	국공유지			비고
				소계	국유지	공유지	
44호 근린공원 (꽃동산A)	필지수	15	14	1	1	-	
	면적(㎡)	29,921	29,814	107	107	-	
	구성비(%)	100.0	99.6	0.4	0.4	-	

나) 174호 소공원 소유자별 총괄표

시설	구분	합계	사유지	국공유지			비고
				소계	국유지	공유지	
174호 소공원 (꽃동산B)	필지수	7	4	3	1	2	
	면적(㎡)	9,182	8,449	733	46	687	
	구성비(%)	100.0	92.0	8.0	0.5	7.5	

- 이 하 여 백 -

2. 편입토지조서

1-1. 44호 근린공원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합계			15필지		132,041	29,921			
1	고아읍	원호리	산40	임	22,659	3,083	지엠파크주식회사 외 7인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2	고아읍	원호리	산40-3	임	3,306	2,984	성산이씨 정언공파종중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	고아읍	원호리	산41	임	12,252	2,341	성산이씨 정언공파종중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	고아읍	원호리	산42-4	임	23,062	1,224	지엠파크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5	고아읍	원호리	산103	도	198	107	국(농림수산부)		
6	고아읍	원호리	417	전	952	327	이00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	고아읍	원호리	417-1	전	529	529	이명식 외 1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		도량동	산37	임	13,234	154	경주김씨구호공파 종친회	구미 원평동	
9		도량동	산41	임	12,694	5,273	지엠파크주식회사 외 1인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0		도량동	산42	임	6,744	4,681	지엠파크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		도량동	산43-1	임	29,499	6,642	김00외 1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5길	
12		도량동	산46	임	4,760	943	김00		
13		도량동	47	전	1,342	823	지엠파크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4		도량동	48	임	405	405	김00 외 1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5길	
15		도량동	48-1	임	405	405	김00 외 1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55길	

1-2. 174호 소공원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합계			7필지		43,073	9,182			
1	고아읍	원호리	산42-4	임	23,062	4,590	지엠파크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2	고아읍	원호리	산102	구	449	46	국 (농림수산부)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공유자)		비고
	읍면	동리					성명	주소	
3	고아읍	원호리	392-2	전	132	14	지엠파크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4		도량동	산46	임	4,760	1,064	김00		
5		도량동	산47-1	임	9,701	1,334	지엠파크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6		도량동	산48-5	임	3,719	1,461	지엠파크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7		도량동	산48-9	도	1,250	673	지엠파크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 이 하 여 백 -

경산시 고시 제2022-82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임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임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임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임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2	경산 임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산시 임당, 조영, 대동, 압량읍 부적리 일원	426,725.8	

2)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426,725.8	100.0	
주 거 지 역	359,493.6	84.2	
제1종일반주거지역	193,553.6	45.4	
제2종일반주거지역	165,940.0	38.8	
상 업 지 역	13,706.0	3.2	
일반상업지역	13,706.0	3.2	
녹 지 지 역	53,526.2	12.6	
자연녹지지역	53,526.2	12.6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대동 지구	최고고도 지구	경산시 대동 일원	7층이하	63,910 (1,846)	경고 제237호 (2004. 09. 13)	
기정	6	조영 지구	최고고도 지구	경산시 조영동, 압량면 부적리 일원	7층이하	74,950 (4,389)	경고 제237호 (2004. 09. 13)	
기정	7	부적1 지구	최고고도 지구	압량면 부적리 일원	7층이하	125,010 (1,922)	경고 제237호 (2004. 09. 13)	

(3)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26,725.8	–	426,725.8	100.0	–	100.0	
주택건설용지		205,674.1	–	205,674.1	48.20	–	48.20	
	단독주택용지	153,791.5	–	153,791.5	36.04	–	36.04	
	공동주택용지	43,796.3	–	43,796.3	10.26	–	10.26	
	근린생활시설용지	8,086.3	–	8,086.3	1.89	–	1.89	
상업용지		9,816.6	–	9,816.6	2.30	–	2.30	
공공시설용지		211,235.1	–	211,235.1	49.50	–	49.50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로	114,259.8	증)12.4	114,272.2	26.79	–	26.79	
	공원	66,404.5	감)12.4	66,392.1	15.56	–	15.56	
	학교	12,639.6	–	12,639.6	2.96	–	2.96	
	유치원	851.6	–	851.6	0.20	–	0.20	
	공공업무시설용지	12,251.2	–	12,251.2	2.87	–	2.87	
	광장	656.0	–	656.0	0.15	–	0.15	
	주차장	178.4	–	178.4	0.04	–	0.04	
	하수도시설	81.1	–	81.1	0.02	–	0.02	
	종교시설	1,032.6	–	1,032.6	0.24	–	0.24	
	통신시설	2,667.0	–	2,667.0	0.62	–	0.62	
	사회복지시설	213.3	–	213.3	0.05	–	0.0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도로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8	17,060 (12,741)	157,684 (103,201)	4	1,598 (635)	15,980 (6,350)	15	5,290 (3,655)	65,000 (40,475)	79	10,172 (8,451)	76,704 (56,376)
중로	7	5,926 (2,624)	80,832 (36,303)	–	–	–	3	3,240 (1,605)	48,600 (24,075)	4	2,686 (1,019)	32,232 (12,228)
소로	91	11,134 (10,117)	76,852 (66,898)	4	1,598 (635)	15,980 (6,350)	12	2,050 (2,050)	16,400 (16,400)	75	7,486 (7,432)	44,472 (44,148)

※ 가각 및 법면 면적 : 11,071.2㎡, ( ) 구역내 연장 및 면적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압1	15	집산도로	420 (112)	광로 3-1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2,040 (806)	광로 3-1	광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국지도로	780 (687)	중로 2-11	중로 3-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645 (422)	중로 3-11	중로 3-1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5	12	보조 간선 도로	345 (117)	광로 3-1	중로 2-1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1	12	집산 도로	1,320 (104)	중로 2-11	중로 3-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압1	12	집산 도로	376	광로 3-1	중로 2-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압7	10	국지 도로	291 (100)	중로 2-압1	소로 1-압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압8	10	국지 도로	488 (84)	중로 2-압1	중로 3-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481 (113)	중로 2-11	중로 3-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38	남측지 구계	중로 2-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중로 2-11	소로 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4	8	국지 도로	108	중로 2-11	소로 3-37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5	8	국지 도로	46	임당동 581	중로 3-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224	중로 2-13	소로 2-1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9	8	국지 도로	160	중로 2-11	소로 2-116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0	8	국지 도로	318	중로 2-13	중로 3-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1	8	국지 도로	118	중로 2-13	소로 2-1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338	중로 2-11	소로 3-29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3	8	국지 도로	399	중로 2-11	소로 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54	8	국지 도로	104	중로 3-1	소로 3-30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압4	8	국지 도로	80	중로 3-압1	소로 3-압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압5	8	국지 도로	79	중로 3-압1	소로 3-압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9	중로 3-1	중로 2-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3	6~8	국지 도로	130	소로 2-4	소로 2-1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66	소로 2-154	소로 3-30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55	소로 3-266	소로 3-19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105	소로 1-22	소로 3-322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07	4	국지 도로	18	소로 3-249	임당동 643-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9	4	국지 도로	22	소로 3-253	임당동 576-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0	4	국지 도로	19	소로 3-195	임당동 577-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1	4	국지 도로	19	소로 3-195	임당동 577-1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2	4	국지 도로	19	소로 3-256	임당동 573-1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3	4	국지 도로	19	소로 3-256	임당동 573-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4	4	국지 도로	19	소로 3-256	임당동 573-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5	6	국지 도로	69	소로 3-압27	소로 2-1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6	6	국지 도로	296	중로 3-5	중로 3-압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7	6	국지 도로	69	소로 3-123	소로 3-1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0	6	국지 도로	64	소로 3-123	소로 3-1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1	6	국지 도로	87	소로 2-119	소로 2-114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2	6	국지 도로	54	소로 2-119	소로 3-12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3	6	국지 도로	216	소로 3-189	소로 3-압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9	6	국지 도로	21	소로 1-23	⑥광장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78	6	국지 도로	94	소로 3-197	소로 3-26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79	6	국지 도로	22	소로 3-189	소로 3-19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84	6	국지 도로	35	소로 2-119	소로 3-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86	4	국지 도로	87	소로 2-123	소로 3-25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87	6	특수 도로	34	중로 2-13	소로 3-214	보행자 전용 도로			
기정	소로	3	189	6	국지 도로	198	소로 2-116	소로 3-4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0	6	특수 도로	32	중로 2-13	소로 3-237	보행자 전용 도로			
기정	소로	3	191	6	특수 도로	31	중로 2-13	소로 3-248	보행자 전용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92	6	특수 도로	34	중로 3-5	소로 3-256	보행자 전용 도로			
기정	소로	3	193	6	국지 도로	104	소로 1-22	소로 2-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4	6	국지 도로	104	소로 1-22	소로 2-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5	6	국지 도로	116	소로 1-23	소로 2-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6	6	국지 도로	93	소로 2-116	소로 3-18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7	6	국지 도로	214	중로 3-1	소로 3-17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8	6	국지 도로	79	소로 3-178	소로 3-19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99	6	국지 도로	68	소로 3-197	소로 3-20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0	6	국지 도로	116	중로 3-1	소로 3-17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1	6	국지 도로	125	중로 2-11	소로 2-11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65	소로 2-116	소로 3-2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3	6	국지 도로	75	소로 3-202	소로 3-204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56	중로 2-13	소로 3-2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5	6	국지 도로	104	중로 3-1	소로 3-20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6	6	국지 도로	256	중로 2-13	중로 3-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7	6	국지 도로	110	소로 2-10	소로 3-20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14	6	국지 도로	177	중로 3-1	소로 2-12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16	6	국지 도로	92	소로 2-120	소로 3-22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66	소로 2-154	소로 3-20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24	6	국지 도로	172	중로 2-13	소로 2-12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27	6	국지 도로	95	소로 2-120	소로 3-2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29	6	국지 도로	97	소로 2-120	소로 3-2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0	6	국지 도로	98	소로 2-120	소로 3-2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1	6	국지 도로	99	소로 2-120	소로 3-214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32	6	국지 도로	69	소로 2-122	소로 3-23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3	6	국지 도로	20	중로 3-1	임당동 59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37	6	국지 도로	126	중로 3-1	소로 2-1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0	6	국지 도로	80	소로 2-122	소로 3-24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1	6	국지 도로	80	소로 2-122	소로 3-24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5	6	국지 도로	80	소로 2-122	소로 3-24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8	6	국지 도로	201	소로 2-121	소로 3-25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9	6	국지 도로	75	소로 3-245	소로 3-25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52	6	국지 도로	121	중로 2-13	소로 2-1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53	6	국지 도로	122	중로 3-5	소로 2-1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56	6	국지 도로	137	소로 2-123	소로 3-25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63	6	국지 도로	105	소로 1-22	소로 3-195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압13	6	국지 도로	253 (199)	광로 3-1	소로 3-압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14	6	국지 도로	188	중로 2-압1	중로 3-압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15	6	국지 도로	51	중로 2-압1	소로 3-압3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27	6	국지 도로	325	중로 2-11	소로 3-압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28	6	국지 도로	113	중로 2-11	소로 3-압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29	6	국지 도로	171	중로 2-11	소로 3-압2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30	6	국지 도로	106	소로 3-압28	소로 3-압2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31	6	국지 도로	183	중로 2-압1	중로 2-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32	6	국지 도로	108	중로 2-압1	중로 2-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33	6	국지 도로	51	소로 1-압8	소로 3-압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압34	6	국지 도로	107	중로 2-11	소로 3-압14	일반 도로			

※( )구역내 연장

(2)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5	임당주차장	임당동 564	178.4	-	178.4	경고 제2014-48호 (2014.5.1)	

(3) 광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미관 광장	미관 광장	경산시 조영동 583-3	656	-	656	경고제257호 (1998.11.18)	

(4) 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705.5 (66,404.5)	감)12.4	99,693.1 (66,392.1)		
소 계					86,242.3 (52,941.3)	감)12.4	86,229.9 (52,928.9)		
변경	9	임 당 제1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임당동 648	11,628.3	감)12.4	11,615.9	경고제257호 (1998.11.18)	
기정	15	임 당 제2공원	근린 공원	경산시 임당동 676-1	36,328 (3,027)	-	36,328 (3,027)	경고제183호 (1999.08.03)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임당 제3공원	근린공원	경산시 임당동 578	13,640	-	13,640	경고제183호 (1999.08.03)	
기정	18	조영공원	근린공원	경산시 조영동 556	24,646	-	24,646	경고제183호 (1999.08.03)	
소계					13,463.2		13,463.2		
기정	42	제 1 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경산시 임당동 631-1	5,437.7	-	5,437.7	경고제257호 (1998.11.18)	
기정	43	제 2 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경산시 조영동 575	1,616.6	-	1,616.6	경고제257호 (1998.11.18)	
기정	44	제 3 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압량면 부적리 382	6,408.9	-	6,408.9	경고제257호 (1998.11.18)	

※( )구역내 면적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근린공원 (임당제1공원)	A = 11,628.3㎡ → 11,615.9㎡ 감) 12.4㎡	소로3-402호선 가각 반영

(5) 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중학교	중학교	압량면 부적리 337	12,639.6	-	12,639.6	경고제257호 (1998.11.18)	

(6) 하수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1-1	하수도시설	경산시 임당동 622	81.1	-	81.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가구

■ 단독주택용지

○ 가구의 규모는 단변을 30~40m, 장변은 80~120m 기준으로 설치하되 단위별 여건에 따라 조정

■ 공동주택용지

○ 근린편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의 이용편리와 경제성 및 교통량의 분산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 유지

■ 상업용지

○ 가구규모는 단변을 25~40m, 장변은 100~150m 기준으로 설치

○ 지역간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으로 생활권 중심기능 수행이 용이하도록 적정규모로 배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변 15~20m, 장변 80~120m 규모로 배치

(2) 획지

■ 단독주택용지

○ 획지규모는 평균 60평형을 기준으로 세장비는 1:1.5~1.8 범위에서 계획

○ 단독주택용지의 획지는 합병 및 분할을 금지함

■ 공동주택용지

○ 572-1번지는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적정 획지 분할이 가능하토록 함

○ 단, 주변대지와 조화 및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직각분할 하되, 최소 대지면적을 2,250㎡ 이상으로하여 분할토록 함

■ 상업용지

○ 간선가로변 150~200평형, 이면도로변 100~150평형을 기준으로 계획

○ 상업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합병·분할을 금지함

■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편익시설의 건축물용도와 가구의 깊이를 고려하여 평균 80~100평형을 기준으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획지는 합병 및 분할을 금지함

■ 공공업무시설용지

○ 공공업무시설의 소요면적에 따른 적정 획지 분할이 가능토록 대지 분할 가능선을 계획

○ 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분할되는 획지는 주변대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키 위해 대지의 2면이상이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최소대지면적은 2,660㎡ 이상으로 분할토록 제한

〈 가구 및 획지계획 〉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	면적(㎡)	비 고
단독주택용지	-	153,791.5	· 분할 및 합병 불가
공동주택용지	63, 89	43,796.3	
상업용지	60~62	9,816.6	· 분할 및 합병 불가
근린생활 시설용지	28, 35, 38, 74~75	8,086.3	· 분할 및 합병 불가
공공업무 시설용지	48	12,251.2	· 분할 허용

라)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변경)

○ 건축물의 용도계획

- 건축물의 용도는 금회 변경용도를 제외한 용지는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
-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으로 지상 1층 이하에만 허용함
- 상업용지의 지정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하되, 상업용지의 입 지 목적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불허용도로 지정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지정용도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2종일반 주거지역 내에 허용하는 행위로 명문화함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 용적률은 2000년(2000.1.28)도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2002년(2002.2.4)도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조문이 이양, 하향규제 되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에서 반영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경산시에서 2003년 10월 12일에 고시한「사적 제300호 경산 임당동 고분군」및 「사적 제331호 경산 조영동 고분군」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임당동 고분군주변 건축협의에 대한 회신[문화재청 기념 86743 -509호(2000.3.21.시행)]기준에 의함. (단, 기타시설용지는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로 적용 5층 이하로 계획)

(1) 단독주택용지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용도	지정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으로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층 / -

(2) 공동주택용지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63, 89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5층 / -

(3) 상업용지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60, 61, 62		용도	지정용도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권장용도	-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 이		5층이하 / -

(4)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28, 35, 38, 74, 75		용도	지정용도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금지업종 및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

(5) 공공업무시설용지 (변경)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48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제14호에서 허용하는 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 -
변경	48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14호 업무시설에서 허용하는 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 -

(6) 교육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50	50	용도	지정용도	중학교
				불허용도	학교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 -
기정	90	90	용도	지정용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유치원 등의 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 -

(7) 사회복지시설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27-1		용도	지정용도	노인정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

(8) 통신시설

구 분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54		용도	지정용도	전화국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 -

(9) 종교시설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3-1		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3층 / -

(10) 주차장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92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

마)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변경없음)

○ 가구별 공동주택 배분계획

구 분			면 적 (㎡)	수용호수 (호)	인구밀도 (인/ha)	평균평형 (평/호)	층수 (층)	용적률 (%)
합 계			43,796.3	531	310	-	-	-
기정	85㎡ 미만	63-2	2,250	40	454	-		
기정	85㎡ 미만	63-2	3,712	39	270	-	5	120이하
기정	60㎡~85㎡	63-1	24,751	299	308	25(30)	5	120이하
기정	60㎡~85㎡	89	13,083.3	153	299	-	5	120이하

○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를 조정

- 60㎡이하, 60~85㎡이하 규모로 지정된 1-1BL 및 1-2BL은 장기간 개발이 안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공동주택 규모를 85㎡미만으로 조정 및 평균평형 삭제하고,
- 85㎡ 초과 규모로 지정된 3BL은 전체 공동주택 규모를 60~85㎡이하로 조정하고 평균평형 삭제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획지번호를 통합

○ 당초 계획보다 공동주택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세대수를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함

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변경없음)

○ 경산시 건축조례 및 관련법규에 의함

○ 6m도로와 접한 단독주택용지는 건축시 출입구를 대지경계선에서 0.5m 후퇴하여 차량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함

사) 도시경관 조성 계획 (변경)

○ 근린공원 4개소(52,928.9㎡)를 경관 및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

○ 어린이 공원은 유치거리를 감안, 분산 배치하여 3개소(13,463.2㎡)를 조성, 1개당 1,500㎡이상 유지하고 주민 1인당 0.6㎡이상 되도록 확보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아)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집산도로 : 사업지구를 300～400m 간격으로 구분하는 중로 2류노선을 각 근린분구로 연결하는 집산 도로기능 부여

○ 국지도로 : 지구내 가구를 연결하는 폭 4～10m의 소로 개설

○ 보행자전용도로 :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4～15m 폭원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 주차장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자) 가설건축물 검토 (변경없음)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견본 주택(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및 재해복구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이전 · 용도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를 적용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이해관계인은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고시 제2022-50호

의성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일원「의성경찰서 신축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의성경찰서 신축사업」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의성 경찰서	공공 청사	의성읍 원당리 13번지 일원	13,620	감) 397	13,223	의고제53호 (2017.05.22)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4	의성경찰서	• 공공청사 변경 - A = 13,620㎡ → 13,223㎡ 감) 397㎡	• 의성경찰서 신축사업 시행 중 장래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공사 시행 중 편입된 필지를 반영하여 군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054-830-634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고시 제2022-57호

청도 군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청도군고시 제2021-38호(2021.6.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청도펜타뷰 골프클럽(대중제 9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청 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도군 금천면 갈지리 산20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청도 군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

2) 명 칭 : 청도펜타뷰 골프클럽 (대중제 9홀)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내용 및 면적 : 체육시설 A = 249,315㎡ (대중제9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리유㈜ 대표이사 이건순
-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22.06.30.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2.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도시과(☏054-370-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합 계		40필지		249,315	249,315						
1	금천면 갈지리	707	전	76	76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	금천면 갈지리	708	답	185	185	-	-				미등기
3	금천면 갈지리	801	전	1,121	1,121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4	금천면 갈지리	802-1	임	1,458	1,458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5	금천면 갈지리	802-2	잡	584	584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6	금천면 갈지리	803-1	잡	4,735	4,735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7	금천면 갈지리	803-2	임	18,611	18,611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8	금천면 갈지리	1355-2	체	52	52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9	금천면 갈지리	1399-1	체	25	25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0	금천면 갈지리	산 186	임	2,853	2,853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1	금천면 갈지리	산 186-3	임	65	65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2	금천면 갈지리	산 186-4	임	154	154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3	금천면 갈지리	산 186-5	임	64	64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4	금천면 갈지리	산 187	임	198	198	-	-				미등기
15	금천면 갈지리	산 188	임	298	298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16	금천면 갈지리	산 189	임	496	496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7	금천면 갈지리	산 190-1	임	354	354	대구 수성구 시지동 258-9	허*철				
18	금천면 갈지리	산 192	임	2,170	2,170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19	금천면 갈지리	산 193	임	298	298	-	-				미등기
20	금천면 갈지리	산 194	임	22,157	22,157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1	금천면 갈지리	산 195	임	2,777	2,777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2	금천면 갈지리	산 196-1	임	1,715	1,715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3	금천면 갈지리	산 197-1	임	678	678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24	금천면 갈지리	산197-2	임	119	119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5	금천면 갈지리	산 204-2	임	47,954	47,954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6	금천면 갈지리	산 205	임	6,347	6,347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7	금천면 갈지리	산 206	임	18,050	18,050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97/115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267	천*분				6/115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30	천*분				6/115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30	천*분				6/11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28	금천면 갈지리	산 206-1	임	11,306	11,306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29	금천면 갈지리	산 207	임	20,513	20,513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0	금천면 갈지리	산 207-2	임	165	165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1	금천면 갈지리	산 207-3	임	4,668	4,668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2	금천면 갈지리	산 224	체	1,398	1,398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3	금천면 갈지리	산 225	체	648	648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4	금천면 김전리	산8-1	임	54,803	54,803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5	금천면 김전리	산29	임	298	298	-	-				미등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류	주소	성명	
36	금천면 김전리	산30	임	397	397	-	-				미등기
37	금천면 김전리	산31-1	임	11,904	11,904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8	금천면 김전리	산32-1	임	2,213	2,213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39	금천면 김전리	산32-2	임	6,041	6,041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40	금천면 김전리	산246-1	체	1,367	1,367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709	아리유 주식회사				

칠곡군 고시 제2022-83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동명면, 북삼읍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해제입안신청 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상어지구》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1,913	-	21,91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1,913	-	21,913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합계	3	557	-	-	1	266	2	291
소로	3	557	-	-	1	266	2	291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557						
소계		1개 노선				266						
기정	소로	2	상1	8	국지도로	266	송산리 1078-4 (중로2-1)	송산리 1132-1	일반도로	-	경고 제139호 (07. 3.22)	
변경	소로	2	상1	8	국지도로	266	송산리 1078-4 (중로2-1)	송산리 1132-1	일반도로	-		가각부 변경
소계		2개 노선				291						
기정	소로	3	상1	6	국지도로	112	송산리 1124 (소로2-상1)	송산리 1015	일반도로	-	경고 제139호 (07. 3.22)	
기정	소로	3	상2	6	국지도로	179	송산리 1095-1 (소로2-상1)	송산리 1015 (소로3-상1)	일반도로	-	경고 제139호 (07. 3.2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상1호선	소로2-상1호선	· 가각부변경(일부구간 폐지) B = 8m, L = 266m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로로서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자 일부구간 폐지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9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1122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외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벽면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 가각에 접한 대지는 도로에 일치되게 설치 권장
		형 태		· 경사지붕 설치 권장 - 구배3/10~5/10 -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2/10이내 허용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경사지붕의 형태는 2면이상의 박공, 방형(우진각), 모임지붕에 한함 · 담장은 생울타리를 원칙으로 하되 투시형으로 하며 높이는 1.2m이하 · 도로가각부(모퉁이변)에 대문설치를 금지 · 대문은 1.2m이하의 투시형 설치
		색 채	· 한국공업규격(KSA0062)에 의해 규정한 색채교육용으로 채택된 먼셀표색계(Munsell system)를 적용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하며 채도 5이하 · 원색이라 함은 먼셀표색계의 5가지 원색 (5R, 5Y, 5G, 5B, 5P) · 가로의 연속성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의 통일성과 조화를 위하여 유사재료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의 색채는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봉암지구》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봉암지구	봉암리 163일원	520,110	–	520,110	경고제86호 (11. 2.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45개 노선				–	10,509	–	–	–	–	–	
소계	2개 노선				–	1,214	–	–	–	–	–	
기정	대로	1	1	28 ~38	주간선 도 로	5,146 (600)	봉암리 38-3 (중로1-1)	학명리 371-4 (도시지역 경계)	일반 도로	개발 제한 구역	건고 제187호 (74. 6.12)	
기정	대로	3	1	25~28 (0~28)	주간선 도 로	4,679 (614)	금암리 205-2 (대로1-1)	기성리 1050-1 (도시지역 경계)	일반 도로	송림 사	건고 제187호 (74. 6.1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8개 노선				–	2,997	–	–	–	–	–	
기정	중로	1	1	20~30 (10~25.5)	집산도로	1,744 (886)	봉암리 564-2 (동명면 봉암리 행정구역 경계)	봉암리 41-2 (대로1-1)	일반도로	봉암리	건고 제187호 (74. 6.12)	
기정	중로	2	1	15~18 (7.5)	보조간선도로	5,412 (184)	봉암리 43-10 (대로1-1)	송산리 1307-1 (도시지역 경계)	일반도로	준주거지역	대고 제54호 (87. 5.18)	
기정	중로	2	봉1	16	집산도로	886 (756)	봉암리 237 (중로2-봉2)	금암리 176-8 (대로3-1)	일반도로	팔거천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중로	2	봉2	16	집산도로	162 (122)	봉암리 237-1 (중로2-봉1)	봉암리 206-6 (중로1-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중로	2	봉3	16	집산도로	65	봉암리 169-1 (중로3-봉2)	봉암리 170-1 (중로1-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중로	3	봉1	12	집산도로	260	구덕리 626-2 (중로2-봉1)	구덕리 679-1 (소로2-봉3)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봉2	12	집산도로	609	봉암리 414-4 (중로1-1)	봉암리 44-3 (중로2-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중로	3	봉3	12 (3~4)	집산도로	274 (114)	봉암리 505-2 (소로2-봉15)	봉암리 440-27 (중로1-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소계		35개 노선			-	6,298	-	-	-	-	-	
기정	소로	1	봉1	10	국지도로	452	금암리 178-1 (중로2-봉1)	금암리 188-4 (중로2-봉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1	봉2	10	국지도로	190	봉암리 410-3 (중로1-1)	봉암리 256-1 (소로2-봉15)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1	봉3	10	국지도로	171	봉암리 167-1 (중로1-1)	봉암리 97-1 (소로2-봉2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	8	국지도로	163	금암리 178-2 (중로2-봉1)	금암리 188-12 (소로2-봉3)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봉2	8	국지도로	83	금암리 188-20 (소로2-봉3)	금암리 1364-87 (소로2-봉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3	8	국지도로	252	금암리 188-5 (중로2-봉1)	구덕리 695-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4	8	국지도로	118	금암리 1364-80 (소로1-봉1)	금암리 178 (소로1-봉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5	8	국지도로	124	금암리 201 (소로1-봉1)	금암리 191 (소로2-봉4)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6	8	국지도로	95	금암리 1364-80 (소로1-봉1)	구덕리 738-42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8	8	국지도로	483	구덕리 634-1 (중로3-봉1)	구덕리 679-2 (중로3-봉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9	8	국지도로	99	구덕리 676 (소로2-봉8)	구덕리 634-2 (소로2-봉8)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봉10	8	국지도로	165	봉암리 193-7 (중로1-1)	봉암리 232-1 (중로2-봉2)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1	8	국지도로	120	봉암리 214-2 (중로2-봉2)	봉암리 197-7 (소로2-봉10)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2	8	국지도로	184	봉암리 229-3 (중로2-봉2)	봉암리 256-1 (소로1-봉2)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3	8	국지도로	110	봉암리 226 (소로2-봉12)	봉암리 205-7 (소로2-봉14)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4	8	국지도로	118	봉암리 205-6 (중로2-봉2)	봉암리 212-1 (소로1-봉2)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5	8	국지도로	530	봉암리 256-1 (소로1-봉2)	봉암리 505-1 (중로3-봉3)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봉16	8	국지도로	260	봉암리 256-1 (소로2-봉15)	봉암리 313 (소로2-봉17)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변경	소로	2	봉16	8	국지도로	197	봉암리 256-1 (소로2-봉15)	봉암리 285-5	일반도로	-		노선축소
변경	소로	2	봉25	8	국지도로	30	봉암리 256-1 (소로2-봉15)	봉암리 313-3 (소로2-봉17)	일반도로	-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봉17	8	국지도로	407	봉암리 508-2 (중로3-봉3)	봉암리 294 (소로2-봉15)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8	8	국지도로	100	봉암리 303-30 (소로2-봉15)	봉암리 311-3 (소로2-봉17)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19	8	국지도로	116	봉암리 507 (소로2-봉15)	봉암리 511-1 (소로2-봉17)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20	8	국지도로	26	봉암리 418-3 (중로1-1)	봉암리 819-5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봉21	8	국지도로	416	봉암리 55 (중로2-1)	봉암리 181-4 (중로3-봉2)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변경	소로	2	봉21	8	국지도로	315	봉암리 55 (중로2-1)	봉암리 182-2	일반도로	-		노선축소
변경	소로	2	봉26	8	국지도로	53	봉암리 181-4 (중로3-봉2)	봉암리 98-2	일반도로	-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봉22	8	국지도로	96	봉암리 45-7 (중로1-1)	봉암리 96 (소로2-봉2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23	8	국지도로	80	봉암리 184-1 (중로3-봉2)	봉암리 97-3 (소로2-봉2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2	봉24	8	국지도로	158	봉암리 399-5 (중로1-1)	봉암리 314 (소로2-봉16)	일반도로	-	칠곡고 제9호 (11.2.28)	
변경	소로	2	봉24	8	국지도로	158	봉암리 399-5 (중로1-1)	봉암리 314 (소로2-봉16)	일반도로	-		가각부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봉1	6	국지도로	358	봉암리 41-1 (대로1-1)	봉암리 30-4 (대로1-1)	일반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3	봉2	4	특수도로	29	금암리 206-8 (소로1-봉1)	금암리 206-8 (대로3-1)	보행자전용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3	봉3	4	특수도로	36	금암리 203-24 (대로1-1)	금암리 202-5 (소로1-봉1)	보행자전용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3	봉4	4	특수도로	38	금암리 1364-176 (중로2-봉1)	금암리 1364-83 (소로2-봉4)	보행자전용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3	봉5	4	특수도로	327	구덕리 726-1 (중로2-봉1)	구덕리 679-1 (소로3-봉1)	보행자전용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3	봉6	4	특수도로	350	구덕리 737-10 (중로2-봉1)	구덕리 738-28 (어린이공원 봉4)	보행자전용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소로	3	봉7	4	특수도로	129	구덕리 619-2 (중로2-봉1)	구덕리 733-7 (어린이공원 봉4)	보행자전용도로	-	경고 제86호 (11. 2.17)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봉16호선	소로2-봉16호선	· 노선축소(일부구간 폐지) B = 8m, L = 260m → 197m, 감63m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로로서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자 일부구간 폐지
	소로2-봉25호선	· 노선분리(일부구간 폐지) B = 8m, L = 30m	·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2-봉21호선	소로2-봉21호선	· 노선축소(일부구간 폐지) B = 8m, L = 416m → 315m, 감101m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로로서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자 일부구간 폐지
	소로2-봉26호선	· 노선분리(일부구간 폐지) B = 8m, L = 53m	·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2-봉24호선	소로2-봉24호선	· 가각부변경(일부구간 폐지) B = 8m, L = 158m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로로서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자 일부구간 폐지

(2)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	2,020	-	2,020		
기정	봉1	노외주차장	금암리 1364-176번지 일원	1,120	-	1,12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봉3	노외주차장	봉암리 169번지 일원	900	-	900	경고제86호 (11. 2.17)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개소	-	-	9,990	-	9,990	
기정	봉4	봉암4 공원	어린이 공 원	구덕리 733-5번지 일원	4,040	-	4,04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봉7	봉암7 공원	어린이 공 원	봉암리 182-1번지 일원	1,500	-	1,50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봉1	봉암1 공원	소공원	금암리 181-4번지 일원	1,660	-	1,66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봉2	봉암2 공원	소공원	금암리 1364-93번지 일원	850	-	85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봉3	봉암3 공원	소공원	금암리 1364-167번지 일원	1,180	-	1,18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봉5	봉암5 공원	소공원	봉암리 195-1번지 일원	760	-	760	경고제86호 (11. 2.17)

(2)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	-	8,685	-	8,685	-	
기정	4	봉암 1녹지	경관 녹지	봉암지구 북측경계 동명저수지변	1,305	-	1,305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5	봉암 2녹지	경관 녹지	봉암지구 북측경계 대로3-1호선변	4,120	-	4,12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6	봉암 3녹지	경관 녹지	봉암지구 남동측경계변	2,440	-	2,440	경고제86호 (11. 2.17)	
기정	7	봉암 4녹지	경관 녹지	봉암지구 북서측경계부	820	-	820	경고제86호 (11. 2.17)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 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	13,000	-	13,000	-	
기정	봉1	봉암 초등학교	초등 학교	구덕리 622	13,000	-	13,000	경고제86호 (11. 2.17)	

라) 방재시설

(1) 하 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합 계		2개소		-	-	-	1.063	23~64	52,376		
기정	봉1	팔거천	지 방 하 천	북서측 구역계	중로 2-봉1	봉암지구	0.520	50~64	29,229	경고 제86호 (11. 2.17)	
기정	봉2	구야천	지 방 하 천	팔거천	동 측 구역계	봉암지구	0.543	23~54	23,147	경고 제86호 (11. 2.17)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계	-	-	62,730	-	
A1	A1	a1	31,280	구덕리 722 일원	· 10,000㎡이상 분할가능 · 가구전체 공동개발 권장
A2	A2	a2	31,450	구덕리 737-4 일원	· 10,000㎡이상 분할가능 · 가구전체 공동개발 권장

나) 단독주택용지 (변경있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B1 ~ B43	B1 ~ B43	b1 ~ b43	252,380	증)660	253,040	금암리 · 봉암리 일원	· 가구단위로 다양한 획지규모 및 형태가 공급되도록 하며, 단독주택의 획지규모는 평균 265~330㎡규모로하되, 최소대지분할 제한면적은 165㎡이상으로 함 · 기존 필지가 60㎡이상으로 지목상 대지인 경우 건축가능 · 1인 소유의 연접한 다수필지는 공동개발을 권장 · 필지간 공동개발 및 합필가능하며, 부정형필지의 정형화를 위한 토지교환 가능

다)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C	C	c	13,000	구덕리 622 일원	· 필지간 합필가능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A2	a1,a2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불허
		건 폐 율		· 20%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 230%이하
		높 이	최고층수	· 20층이하
			최저층수	–
			평균층수	· 18층이하
		배 치		· 채광 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
		형 태	탑 상 형 (권 장)	· 지붕은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로 권장
		색 채		· 원색을 지양하고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12m이상 도로변 : 2m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나)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B1~B43	b1~b43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30% 이상을 주거용도로 권장 (단, 15m이상 도로변 제외)
			불허용도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건 폐 율		· 60%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 2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채광 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권장
		형 태		· 경사형지붕 설치권장
		색 채		· 원색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15m이상 도로변 : 2m(공공보행통로) · 12m이상 도로변 : 1m(가로 개방감 확보)

다)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C	C	용 도	허용용도	·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60%이하
		용적률	허용용적률	· 2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채광 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권장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담 장		·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공동주택에 한함) ·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설치	
차량 동선 및 주차	차량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권장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상구간 : 중로이상의 교차로에서 10m이내 전구간	
	건축물부설 주 차 장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설치기준) 및 칠곡군 주차장조례 규정에 따름	
간판 및 옥외광고물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칠곡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름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북삼읍 율리》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780	율리 830-271 (소로 2-14)	율리 349-2 (소로1-21)	일반도로	율리 공업지역	칠고 제25호 (05.11.21)	
변경	소로	1	21	10	국지도로	434	율리 830-271 (소로 2-14)	율리 355-1	일반도로	율리 공업지역		노선축소
변경	소로	1	51	10	국지도로	186	830-258 (소로1-21)	율리 346-9	일반도로	율리 공업지역		노선분리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21호선	소로1-21호선	· 노선축소(일부구간 폐지) B = 10m, L = 780m → 434m, 감346m	·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로로서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며,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자 일부구간 폐지
	소로1-51호선	· 노선분리(일부구간 폐지) B = 10m, L = 186m	· 일부구간 폐지에 따른 노선분리

4.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054-979-68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시 군

공 고

경주시 공고 제2022-1591호

경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서류 열람공고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출입로 개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진입도로구간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호선)일부구간의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경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	35~38	주간선도로	7,240	5호광장	용강동 구역계	일반도로	북천	건고 제13호 (1970. 01.12.)	미집행구간 실효 (경주시 고시 제2020-192호)
변경	대로	1	5	35~38	주간선도로	7,240	5호광장	용강동 구역계	일반도로	북천	건고 제13호 (1970. 01.12.)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출입 가감속 차로 시행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사항

가. 사업의 위치 : 경주시 동천동 175-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ㅇ 사업의 명칭 :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출입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사업 면적, ㎡)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5	35	주간선도로	7,240	5호광장	용강동 구역계	일반도로	북천	건고 제13호 (1970. 01.12.)	7,711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ㅇ 성 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ㅇ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평면 행복로 35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4년 06월 30일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6. 23. ~ 2022. 7. 13.

나. 열람장소 :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4.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423) 및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예정지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 계					36,566	7,711			
1	경주시	동천동	130-41	답	341	22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1308호 (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이영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2	경주시	동천동	173-3	전	40	40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3	경주시	동천동	175-1	답	113	113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4	경주시	동천동	175-2	답	820	820	용강동 1313-5 아시아나트원빌 비-303호	현경송	
5	경주시	동천동	175-18	답	317	317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6	경주시	동천동	175-19	답	93	93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7	경주시	동천동	183-1	답	480	7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101동 1308호 (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이영희	
8	경주시	동천동	189-3	전	1,818	85	경상북도 경주시 칠불암길 77-8 (남산동)	임정희	
9	경주시	동천동	190	답	1,418	40	동천동 599-39	이인덕	
10	경주시	동천동	191-1	답	3,329	110	경주시 성건동 620-339	함진오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11	경주시	동천동	733-625	답	161	161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12	경주시	동천동	733-626	답	220	1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13	경주시	동천동	733-855	답	825	825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14	경주시	동천동	733-881	답	356	35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15	경주시	동천동	733-882	도	122	56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6-11	이태형	
16	경주시	동천동	733-884	답	59	5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17	경주시	동천동	733-2239	잡	312	3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60	정성진	
18	경주시	동천동	733-2460	답	46	4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 개발공사	
19	경주시	동천동	189-1	전	1,818	7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57번길 22, 105동 503호(동천동, 경주우방타운)	임필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20	경주시	동천동	173-2	도	999	585		국(건설부)	
21	경주시	동천동	188-2	도	2,675	694		국(건설부)	
22	경주시	동천동	183-3	도	76	76		국(건설부)	
23	경주시	동천동	731-1	도	616	87		국(건설부)	
24	경주시	동천동	733-613	도	7,335	111		국(건설부)	
25	경주시	동천동	733-880	도	7,903	1,921		국(건설부)	
26	경주시	동천동	733-885	도	1,187	362		국(건설부)	
27	경주시	동천동	733-886	잡	271	271		경주시	
28	경주시	동천동	733-887	도	1,072	50		국(건설부)	
29	경주시	동천동	738	도	181	76		국(건설부)	
30	경주시	동천동	0-24	가	-	8			구적 기준
31	경주시	동천동	161-2	도	114	9		국(건설부)	
32	경주시	동천동	187-10	도	1,449	3		국(건설부)	

김천시 공고 제2022-151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거문들~국대도간 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통지하오니 토지,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내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거문들~국대도간 교차로 설치공사

나. 위 치 : 김천시 삼락동 1006-1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3년간

라.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김천시 삼락동 산54-2번지 외 49필지

○ 편입토지 내역(국 · 공유지 제외)

소재지	편 입 지 번	
김천시 삼락동	사유지	산54-2, 1108-1, 1017-3, 1017-2, 1106-10, 산38, 1022-7, 1022-2, 1043-8, 1043-7, 1043-5, 1043-4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김천시 도로철도과, 대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6. 23. ~ 2022. 7. 7.(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천시 도로철도과(054-420-6877)【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 김천시 대신동행정복지센터(054-432-2517)【경북 김천시 신양1길 22】

다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김천시 도로철도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2. 7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 통지)

나. 보상금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니, 추천하실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중 다수가 선택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다.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기 타

가. 편입면적은 실시설계에 따른 예상면적이며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분

할측량, 감정평가 완료 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도로철도과(054-420-6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편입토지내역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	편입 예정 면적 (㎡)	토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고
	동	지 번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2필지							
1	삼락	산54-2	임	205	205	다수동(미등기)	정*기		
2	〃	1108-1	전	62	62	(미등기)	김*문		
3	〃	1017-3	전	5	5	봉산면(미등기)	정*용		
4	〃	1017-2	묘	101	101	봉산면(미등기)	정*용		
5	〃	1106-10	묘	2	2	(미등기)	김*규		
6	〃	산38	임	1,068	1,068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50, 1**동 1**호(동변동, 유니버시아드선수촌)	김*숙		
7	〃	1022-7	답	361	361	김천시 삼락동 925-* 김천시 교동 744-*	최*분 김*자	3/9 2/9	
8	〃	1022-2	답	148	148				
9	〃	1043-8	전	75	75	금릉군 봉산면 신동 57* 금릉군 봉산면 예지리 9* 금릉군 봉산면 덕천동 15* 금릉군 봉산면 덕천리 5* 금릉군 봉산면 덕천리 6* 금릉군 봉산면 신동 53* 금릉군 봉산면 인의리 8*	정*용 정*용 정*용 정*용 정*영 정*영 정*기	1/7 1/7 1/7 1/7 1/7 1/7 1/7	
10	〃	1043-7	전	525	525				
11	〃	1043-5	전	24	24				
12	〃	1043-4	전	508	508				

안동시 공고 제2022-1295호

보상계획 열람(정정)공고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용상소로(2-4)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2. 사 업 명 : 용상소로(2-4) 개설공사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안동시 용상동 일원

나. 사업내용 : 도로개설 L=250.0m, B=8.0m

4. 정정사유

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유자 변경

나. 감정평가에 따른 지장물 조서 변경

5.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6.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06. 24.～2022. 07. 11.(17일간)

7. 열람장소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 (☎ 054-840-5403)

8.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10.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ㆍ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양식에 의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 내용의 변경이나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 054-840-5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용상	1078-116	1078-116	전	241	123	공	안동시			변경 없음
2	용상	1078-155	1078-155	전	288	14	공	안동시			변경 없음
~~3~~	~~용상~~	~~1078-126~~	~~1078-126~~	~~장~~	~~98~~	~~98~~	~~안동시 남부동 101-3~~	~~임○규~~			~~거정~~
3	**용상**	**1078-126**	**1078-126**	**장**	**98**	**98**	**공**	**안동시**			**변경**
4	용상	1078-189	1078-189	대	36	36	공	안동시			변경 없음
5	용상	1078-28	1078-28	도	1,226	221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없음
6	용상	1078-99	1078-99	구	4,750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없음
7	용상	1078-22	1078-22	도	624	624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없음
8	용상	1078-127	1078-200	전	514	65	안동시 안흥동 315-16	유○규	압류	안동시	변경 없음
~~9~~	~~용상~~	~~1078-64~~	~~1078-199~~	~~전~~	~~165~~	~~37~~	~~안동시 용상동 535-48~~	~~손○자~~			~~거정~~
9	**용상**	**1078-64**	**1078-199**	**전**	**165**	**37**	**공**	**안동시**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성 명	
~~10~~	~~용상~~	~~1078-61~~	~~1078-198~~	~~전~~	~~307~~	~~8~~	~~안동시 마들2길 35-10 (용상동)~~	~~김○자~~	~~근저당~~	~~안동농업협동조합~~	~~거정~~
10	~~용상~~	1078-61	1078-198	전	307	8	공	안동시			변경
~~11~~	~~용상~~	~~1078-26~~	~~1078-197~~	~~대~~	~~159~~	~~34~~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6길46(용상동)~~	~~전○자~~			~~거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83-4~~	~~전○자~~			~~거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73, 108동 404호(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전○규~~			~~거정~~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87~~	~~전○규~~	~~압류~~	~~경주시~~	~~거정~~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26~~	~~전○규~~			~~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98, 214호(괴정동, 천아하늘정원 아파트)~~	~~주식회사 일운~~			커정
11	~~용상~~	1078-26	1078-197	대	159	34	공	안동시			변경
~~12~~	~~용상~~	~~1078-140~~	~~1078-140~~	~~장~~	~~60~~	~~60~~	~~안동시 용상동 1078-25~~	~~어○자~~			커정
12	~~용상~~	1078-140	1078-140	장	60	60	공	안동시			변경
13	~~용상~~	1078-159	1078-159	장	21	21	공	안동시			변경 없음
14	~~용상~~	1078-154	1078-154	도	591	89	공	안동시			변경 없음
15	~~용상~~	10787-152	10787-152	도	116	54	공	안동시			변경 없음
~~16~~	~~용상~~	~~1084-19~~	~~1084-19~~	~~전~~	~~5~~	~~5~~	~~안동시 마들3길 22-1 (용상동)~~	~~김○석~~			커정
16	~~용상~~	1084-19	1084-19	전	5	5	공	안동시			변경
~~17~~	~~용상~~	~~1084-17~~	~~1084-17~~	~~전~~	~~52~~	~~52~~	~~안동시 용상동 1084-1~~	~~김○호~~			커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7	~~용상~~	1084-17	1084-17	전	52	52	공	안동시			변경
18	용상	1084-16	1084-16	도	83	83	안동시 용상동 1015-6	주식회사 대성건설	압류	안동시	변경
									~~근저~~ 당	~~주식회사안동상호산용~~금고	
									파산관제인	이상혁 변호사	
19	용상	1084-3	1084-22	전	3,342	143	안동시 북문 옥정길 116 (옥정동)	권○룡	근저당	안동농업협동조합	변경 없음
~~20~~	~~용상~~	~~1084-10~~	~~1084-10~~	~~전~~	~~132~~	~~132~~	국	~~재정경제원~~			~~기정~~
20	~~용상~~	1084-10	1084-10	전	132	132	공	안동시			변경
21	용상	1084-5	1084-23	전	1,348	60	안동시 용상동 1586 심아빌라 202호	권○진			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주 소	성명	
~~1~~	안동	~~용상~~	~~1078-26~~	~~주택~~	~~콘크리트~~	~~14~~	~~㎡~~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6길46(용상동)~~	~~전○자~~	카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83-4~~	~~전○자~~	
				~~창고~~	~~콘크리트~~	~~5.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73, 108동 404호(우만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전○규~~	~~카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용호로 6, 301동 609호(평광현대아파트)~~	~~전○자~~	
				~~담장~~	~~벽돌~~	~~1.0~~	~~m~~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87~~	~~전○규~~	~~카정~~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26~~	~~전○규~~	
1	안동	용상	1078-26	주택	블록조 스레트	13.2	㎡	공	안동시	변경
				보일러실	블록조 스레트	2.38	㎡			
				가작	블록조 함석	3.22	㎡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바닥	콘크리트	8	㎡			
				대문	철제, 문주포함	1	식			
				담장	블록	3.6	㎡			
~~2~~	~~안동~~	~~용상~~	~~1078-64~~	~~주택~~	~~콘크리트~~	~~12~~	~~㎡~~	~~안동시 용상동 535-48~~	~~손○자~~	~~거정~~
				~~담장~~	~~벽~~	~~2.1~~	~~m~~			
2	안동	용상	1078-64	창고	블록조판넬	15.75	㎡	공	안동시	변경
				바닥	콘크리트	10	㎡			
				담장	블록	7.2	㎡			
				대문	철제, 문주포함	1	식			
3	안동	용상	1078-127	뽕나무	R20	1	주	안동시 용상동 535-48	손○자	변경
				사철나무	R20	1	주			
				다년생 초화류		1	군			
4	안동	용상	1078-140	바닥	콘크리트	12	㎡	공	안동시	변경
5	안동	용상	1078-186	화단		1	식	공	안동시	변경
				다년생 초화류		1	군			
6	안동	용상	1084-19	바닥	콘크리트	5	㎡	공	안동시	변경

번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7	안동	용상	1084-17	바닥	콘크리트	52	㎡	공	안동시	변경
8	안동	용상	1084-16	문주		1	식	안동시 용상동 1015-6	주식회사 대성건설	변경
				바닥	콘크리트	83	㎡			
9	안동	용상	1084-3	휀스	EGI, 출입문포함	33	m	안동시 북문옥정길 116 (옥정동)	권○룡	변경
10	안동	용상	1084-4	정비고	철파이프 조판넬	7	㎡	안동시 용상동 1586 심아빌라 202호	권○진	변경
				부속 창고	철파이프 조강판	2.5	㎡			
				휀스	EGI	36	m			
11	안동	용상	1084-5	대문	철파이프	1	식	안동시 용상동 1586 심아빌라 202호	권○진	변경
				간판		3	식			
				은행 나무	R50	2	주			
				바닥	아스콘	20	㎡			

구미시 공고 제2022-1202호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구 미 시 장

1. 등록 및 폐기 연월일 : 2022. 6. 23.

2. 등록 및 폐기 사유 : 노후 인증기 교체

3. 공인명(인영)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상모사곡동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상모사곡동장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양포동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양포동장인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인동동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인동동장인	

구미시 공고 제2022-1213호

구미도시계획시설(녹지:원평, 상모, 인동)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안) 공람공고

구미도시계획시설(녹지: 원평, 상모, 인동)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미시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구 미 시 장

1. 열람기간	○ 2022. 6. 23. ~ 7. 7. / 14일간
2. 열람장소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 (☎054-480-5582)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평 시설녹지 : 구미시 원평동 347번지 일원 ○ 상모 시설녹지 : 구미시 상모동 312-1번지 일원 ○ 인동 시설녹지 : 구미시 황상동 304-3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구미도시계획시설(녹지:원평, 상모, 인동) 사업 ○ 명칭 : 구미 도시계획시설 녹지조성사업

5. 사업의 규모	○ 원평 시설녹지 : A=4,344㎡ ○ 상모 시설녹지 : A=2,310㎡ ○ 인동 시설녹지 : A=4,998㎡
6.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성명 : 구미시장
7. 사업시행기간	○ 변경인가일로부터 3년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원평시설녹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09,406	4,344							
1	구미시 원평동	347	답	139	70	1/1	주식회사 씨네포	구미시 구미중앙로 126 (원평동)				
2	구미시 원평동	348	답	83	82	1/1	김학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61, 105동 2002호(원곡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3	구미시 원평동	349	답	262	18	1/1	주식회사 씨네포	구미시 원평동 353-4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4	구미시 원평동	349-1	답	145	145	1/1	주식회사 씨네포	구미시 원평동 353-4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지상권자	
5	구미시 원평동	350	철	2,526	371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구미시 원평동	353-1	전	63	63	1/1	김학재	구미시 원평동 212-4				
7	구미시 원평동	445	철	2,748	1,615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구미시 원평동	429-24	도	4,873	130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9	구미시 원평동	444-16	전	105	105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0	구미시 원평동	447-2	철	43	43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구미시 원평동	447-6	전	73	73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구미시 원평동	448-11	답	148	3	1/1	김노순	구미시 원평동 448-10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지상권자	
13	구미시 원평동	448-12	답	30	30	1/1	김노순	구미시 원평동 448-10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지상권자	
14	구미시 원평동	448-13	답	31	31	1/1	이필봉	구미시 원평동 448-10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지상권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구미시 원평동	448-8	답	32	32	1/1	이필봉	구미시 원평동 448-10				
16	구미시 원평동	452-9	대	335	1	1/1	주식회사 씨네포	구미시 원평동 353-4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지상권자	
17	구미시 원평동	964-25 6	대	133	51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18	구미시 원평동	964-25 7	대	622	115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19	구미시 원평동	964-25 8	대	18	18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19	구미시 원평동	964-60 4	천	56,236	189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0	구미시 원평동	991-1	도	670	40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구미시 원평동	991-5	차	77	2	1/1	주식회사 씨네포	구미시 원평동 353-4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근저당권자	
									구미농업 협종조합	구미시 형곡동로 107(형곡동)	지상권자	
22	구미시 원평동	1008-1	철	39,644	772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3	구미시 원평동	1008-101	도	46	43	1/1	(국)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4	구미시 원평동	1008-82	전	159	144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25	구미시 원평동	1008-83	전	165	158	1/9	이지호	구미시 선기로 77, 108동 203호(남통동, 남통이편한세상)				
						1/9	이정주	구미시 백산로5길 9, 105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1호(송정동, 힐스테이트 송정)				
						1/9	김현주	구미시 문장로 111, 108동 2905호(도량동, 도량롯데캐슬)				
						1/9	김경선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1동 1404호(송정동, 푸르지오캐슬)				
						1/9	장동주	김천시 용전3로 24, 204동 603호(율곡동)				
						1/9	권오훈	구미시 봉곡남로20길 15, 201동 1004호(봉곡동, 현대아이파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송태보	구미시 봉곡로23길 31, 902호(봉곡동)				
						1/9	권강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40, 204동 407호(삼우한누리타운)				
						1/9	김태학	구미시 선기로3길 58-33(남통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상모시설녹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7,968	2,310							
1	구미시 상모동	312-1	대	2	2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2	구미시 상모동	464-9	도	56	56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3	구미시 상모동	464-15	답	782	782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4	구미시 상모동	464-22	답	501	501	1/1	이은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81-100 사직삼정그린코아 110동 1704호				
5	구미시 상모동	464-35	답	75	75	1/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구미시 상모동	519	도	59	59	1/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구미시 상모동	513	철	16,493	835	1/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인동시설녹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1,737	4,998							
1	구미시 황상동	304-3	답	47	47		민한기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21, 107동 705호(경남아너스빌)				
2	구미시 황상동	304-10	도	1,593	12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3	구미시 황상동	304-18	답	225	225	1/2	김영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9-1, 범어우방 파크빌 101동 803호	김영재	구미시 인동 가산로1, 2층 (황상동)	근저당권자	
						1/4	남영해	구미시 형곡로39길 16-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1호(형곡동, 삼보맨션)				
						1/4	박하누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34, 206동 1105호(방배동, 방배2차현대홈타운)				
4	구미시 황상동	304-33	답	82	82		김영재	대구 수성구 범어동 259-1 범어우방파크빌 101-803				
							㈜피렌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1205-에스50 (여의도동, 신송빌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정배	구미시 옥계북로33, 103동 1902호(옥계동, 삼구트리니엔)				
							박정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 아트빌 1010동 208호				
							최창수	구미시 형곡동 107-15				
5	구미시 황상동	305-27	답	49	1		김은정	구미시 수출대로3길 130, 107동 1002호 (공단동, 우림필유)	석적농업협동조합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2292	근저당권자	
6	구미시 황상동	305-70	답	357	357	1/4.5	허문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4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1동 804호 (풍덕천동,동문아파트)				
						2.5/4.5	허영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47, 101동 804호 (풍덕천동,동문아파트)				
						1/4.5	허영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비동 2001호(동천동)				
7	구미시 황상동	313-13	답	110	110		김상수	구미시 인의동 500				
8	구미시 황상동	314-2	답	291	291		김상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57-1, 지산영남맨션 102-1005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근저당권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구미시 황상동	314-8	답	257	257		문승환	대구광역시 수성구범어동 371, 궁전맨션 1-803				
10	구미시 황상동	314-19	답	293	293		장영석	구미시 인의동 986 구미인의 푸르지오 107-1202				
11	구미시 황상동	315-1	답	91	91		장영석	구미시 인의동 986 구미인의 푸르지오 107-1202				
12	구미시 황상동	315-5	답	51	51	1/2	유말선	구미시 황상동 280				
						1/2	문승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71 궁전맨션 1-80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구미시 황상동	316-1	답	54	54	1/3	마경철	구미시 인동중앙로5길 28-28(황상동)				
						1/3	이도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490-22				
						1/3	김홍구	구미시 황상동 633-33				
14	구미시 황상동	317-1	도	167	31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구미시 황상동	317-2	도	173	19		(국)농림축산식품부					
16	구미시 황상동	317-3	구	72	11		(국)농림축산식품부					
17	구미시 황상동	318-4	답	420	420		㈜재은인베스트먼트	구미시 인동32길 22-32, 3층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구미시 황상동	318-33	답	187	187		㈜재은인베스트먼트	구미시 인동32길 22-32, 3층				
19	구미시 황상동	318-49	답	332	332		김홍구	구평동 진평구획지구 1블럭, 대우아파트 107동 502호				
20	구미시 황상동	633-25	천	90	90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21	구미시 황상동	633-34	천	193	1		(국)국토교통부					
22	구미시 황상동	635-10	도	487	12		(국)국토교통부					
23	구미시 인의동	790-55	천	16	12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24	구미시 인의동	790-56	천	851	12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구미시 인의동	372-4	답	241	48	1/7	이중근	구미시 인동35길 33, 구미인의 푸르지오 107동 1002호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권자	
						1/7	이청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0,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1418동 103호				
						1/7	이은실					
						1/7	이재현					
						1/7	이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35번길 21,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 3단지 1313동 503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이은숙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8동 1602호(송정동, 푸르지오캐슬)				
						1/7	이은주	구미시 송정동 40, 대우로얄아파트 102-201				
26	구미시 인의동	372-9	도	233	18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27	구미시 인의동	373-1	답	290	239	1/4	이재현	구미시 인동36길 31, 110동 1202호(구평동, 구미구평 푸르지오)				
						1/4	김은숙	구미시 인동36길 31, 110동				
						1/4	이윤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이주호	1202호(구평동, 구미구평 푸르지오)				
28	구미시 인의동	374-1	답	512	14	73.5/157	박대산	구미시 황상동 280-15	㈜조흥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권자	
						41.75/157	이성현	구미시 인의동 4블럭 대동다숲 101동907호				
						20.875/157	이종민	구미시 인의동 4블럭 대동다숲 101동907호				
						20.875/157	김복순	구미시 인의동 378-4				
29	구미시 인의동	374-3	답	30	1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구미시 인의동	374-5	대	211	95	2/5	㈜재은인베스트먼트	구미시 인동32길 22-32, 3층				
						3/5	박문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36길 20, 206동 1201호(그린맨션)				
31	구미시 인의동	374-10	대	40	30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32	구미시 인의동	374-15	답	156	73		구미시	구미시 송정대로 55				
33	구미시 인의동	374-16	답	85	22		밀양박씨 아당공파 참의공인 동종중	구미시 인동가산로 39 (인의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구미시 인의동	558-4	답	323	323		김형준	구미시 여헌로21-11, 105동 801호(인의동)				
35	구미시 인의동	792-15	도	11105	82		(국)국토교통부					
36	구미시 인의동	806-6	도	4	4		(국)국토교통부					
37	구미시 인의동	807-11	구	232	17		(국)농림축산식품부					
38	구미시 진평동	1021-8	도	190	10		(국)농림축산식품부					
39	구미시 진평동	1025	답	191	7	28/133	장호건	칠곡군 석적면 남율리 710 우방신천지타운 201-110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133	장순애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08, 주공아파트 402동 1505호				
						20/133	장예지	김해시 지내동 67-19 청솔2차아파트101-801				
						77/133	장진건	구미시 구평동 453 부영아파트 305-206				
40	구미시 진평동	1026-11	답	147	147	2/10	곽도순	구미시 장천면 장천 상림2길 35-3	인동 새마을 금고	구미시 진평동 63-1	근저당 권자	
						2/10	박성희	구미시 인동36길 23-34, 711동 50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0	박은희	구미시 해평면 어은길 244-1				
						1/10	박두기	구미시 인동가산로 442-1				
						1/10	김재태	구미시 인동36길 23-34, 711동 504호				
						1/10	박은영	구미시 해평면 어은길 244-1				
						1/10	김진혁	구미시 인동36길 23-34, 711동 504호				
41	구미시 진평동	1026-2	답	223	223	2/10	곽도순	구미시 장천면 장천 상림2길 35-3	인동 새마을 금고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63-1	근저당 권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 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0	박성희	구미시 인동36길 23-34, 711동 504호				
						2/10	박은희	구미시 해평면 어은길 244-1				
						1/10	박두기	구미시 인동가산로 442-1				
						1/10	김재태	구미시 인동36길 23-34, 711동 504호				
						1/10	박은영	구미시 해평면 어은길 244-1				
						1/10	김진혁	구미시 인동36길 23-34, 711동 504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2	구미시 진평동	1026-5	답	194	194	1.5/4.5	천인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47,101동 804호(풍덕청동,동문아파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1/4.5	허영석					
						1/4.5	허문영					
						1/4.5	허영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비동 2001호(동천동)				
43	구미시 진평동	1027-2	답	124	124	1.5/4.5	천인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47,101동 804호(풍덕청동,동문아파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1/4.5	허영석					
						1/4.5	허문영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5	허영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비동 2001호(동천동)				
44	구미시 진평동	1033	대	390	1		박현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455,105 동806호 (수성동3가,롯데캐슬)	이석호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강촌마을111 동1209호	전세권자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대구지점)	근저당권자	
45	구미시 진평동	1034	답	286	286		박현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455,105 동806호 (수성동3가,롯데캐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원래지번)	지목	면적		지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6	구미시 진평동	1035-2	천	42	42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 제2022-948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118-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2022. 6. 23. ~ 2022. 7. 13. (국·공휴일 제외 15일간)

2.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전화: 054-330-6341, 팩스: 054-330-6349]

3.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118-2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청통 죽정 온천지구 개발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 설치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사업

2) 명 칭: 청통 죽정 온천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당초) 13,753㎡ → (변경) 13,822㎡

(기정) 도로 6개소 4,877㎡, 주차장 2개소 1,976㎡, 소공원 2개소 2,422㎡, 완충녹지 2개소 4,278㎡, 수도공급설비 1개소 200㎡

(변경) 도로 6개소 4,930㎡, 주차장 2개소 1,950㎡, 소공원 2개소 2,497㎡, 완충녹지 2개소 4,244㎡, 수도공급설비 1개소 201㎡

2) 사업시행 면적: (당초) 13,753㎡ → (변경) 13,822㎡

(기정) 도로 6개소 4,877㎡, 주차장 2개소 1,976㎡, 소공원 2개소 2,422㎡, 완충녹지 2개소 4,278㎡, 수도공급설비 1개소 200㎡

(변경) 도로 6개소 4,930㎡, 주차장 2개소 1,950㎡, 소공원 2개소 2,497㎡, 완충녹지 2개소 4,244㎡, 수도공급설비 1개소 201㎡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조영권

2)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야사동)

바.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8. 6. 30.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3. 4. 30.

사. 관계서류 및 도면: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1 참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2 참조

4.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 및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T.054-3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	죽정리	106-1	106-1	답	328	328	328	328	조영권 강대홍 정말숙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부림 새마을금고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2	죽정리	107-6	107-6	구	25	25	25	25	조영권 강대홍 오기성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 106동 402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3	죽정리	108-4	108-10	답	11	1	1	1	양태자 김은정 김소정 양순이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8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80, 114동 604호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111, 102동 70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8길 19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4	죽정리	108-5	108-11	답	144	4	4	4	이준호 양태자 김은정 김소정 양순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35,108동 1403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8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80,114동 604호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111,102동 701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8길 19				
5	죽정리	108-6	108-12	답	608	17	17	17	이준호 양태자 김은정 김소정 양순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35,108동 1403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8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80,114동 604호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111,102동 70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8길 19	영천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6	죽정리	108-7	108-7	답	171	171	171	171	강대홍 오기성 박찬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106동 4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상록1길 9, 2동 505호				
7	죽정리	108-8	108-8	답	108	108	108	108	강대홍 오기성 박찬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106동 4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상록1길 9, 2동 505호				
8	죽정리	109	109-11	답	-	1	-	1	양태자 김은정 김소정 양순이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8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80, 114동 604호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111,102동 70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38길 19	영천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9	죽정리	109-1	109-13	도	168	121	79	121	영천시					
10	죽정리	109-3	109-18	도	73	6	46	6	영천시					
11	죽정리	109-4	109-15	답	398	151	176	151	임태미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26, 703동 1205호	영천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109-19	답	-	14	-	14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2	죽정리	109-6	109-16	답	235	11	232	11	강대홍 오기성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106동 4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김명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69길 50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09-20	답	-	221	-	221	강대홍 오기성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106동 4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김명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69길 50	근저당권	
13	죽정리	109-7	109-17	답	30	3	3	3	최성열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995, 106동 401호	영천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14	죽정리	110-1	110-3	도	184	137	135	137	영천시					
15	죽정리	111-1	111-5	도	100	6	7	6	영천시					
16	죽정리	111-2	111-2	답	34	34	34	34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영천신용 협동조합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69-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남구 봉월로133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17	죽정리	111-3	111-6	답	703	304	463	304	이원배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201번지, 15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영천농업 협동조합 부림새마을 금고 김진구 정대근 송주연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69-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25	근저당권 지상권	
			111-7	답	-	155	-	155	임장식 김선호 이홍민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248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소신평길2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102, 203동 2305호	영천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8	죽정리	112-1	112-3	과	842	402	621	402	이지연 조영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27,101동 1701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112-5	과	-	159	-	159	이지연 조영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27,101동 1701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조인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4길13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12-10	과	-	3	-	3	이지연 조영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27,101동 1701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조인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4길13	근저당권 지상권	
			112-6	과	-	49	-	49	이지연 조영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27,101동 1701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9	죽정리	112-2	112-8	과	439	287	392	287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12-11	과	-	63	-	63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근저당권	
			112-4	과	-	1	-	1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12-7	과	-	41	-	41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20	죽정리	117	117-2	전	193	42	41	42	성봉순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11, 103동 601호	영천신용협동조합 박강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65	근저당권 지상권	
21	죽정리	118	118-8	전	973	2	69	2	강대홍 오기성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 106동 402호				
			118-9	전	-	1	-	1	강대홍 오기성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 106동 402호				
22	죽정리	118-5	118-15	전	358	315	297	315	정종태 정순진 정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02동 3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천신용협동조합 홍상식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경상북도 영천시 금완로 46-24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올림픽로 135, 202동 3301호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4길 10, 107동 102호				
			118-20	전	-	43	-	43	최성열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995, 106동 401호	영천신용협동조합 홍상식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경상북도 영천시 금완로 46-24	근저당권 지상권	
23	죽정리	118-6	118-11	전	412	261	261	261	김민구 이진희 박세환 구정숙 조형준 조은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7, 304동 1403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56, 121동 1501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65-10, 103동 304호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17, 2동 501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9-8, 303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43길 12, 1동 306호				
24	죽정리	118-7	118-17	전	177	50	61	50	강대홍 오기성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90,106동 4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김명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69길50	근저당권	
25	죽정리	118-2	118-10	전	412	412	412	412	김민구 이진희 박세환 구정숙 조형준 조은아 성봉순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117, 304동 1403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121동 1501호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영천신용 협동조합 박강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65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엄사중앙로65-10, 103동 304호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17, 2동 501호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9-8, 303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43길 12, 1동 306호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111, 103동 601호				
26	죽정리	119-1	119-1	답	719	719	719	719	조영권 강대홍 정말숙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20, 101동 609호	부림새마을금고 정해선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55번길1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27	죽정리	120-2	120-7	임	625	11	250	11	국 (재무부)					
			120-13	임	-	31	-	31	국 (재무부)					
			120-14	임	-	208	-	208	국 (재무부)					
28	죽정리	120-3	120-9	답	749	9	53	9	이재석 정현숙 김순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9-2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1길78, 3동 305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41-14, 103동 703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120-15	답	-	44	-	44	이재석 정현숙 김순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9-2 대구광역시 동구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화랑로11길78, 3동 305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41-14, 103동 703호				
29	죽정리	120-4	120-10	답	538	7	7	7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30	죽정리	120-5	120-11	답	368	65	356	65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120-16	답	-	243	-	243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20-17	답	-	49	-	49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31	죽정리	120-6	120-12	답	522	42	49	42	성봉순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11, 103동 601호	영천신용협 동조합 박강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65	근저당권 지상권	
			120-18	답	-	7	-	7	성봉순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11, 103동 601호	영천신용협 동조합 박강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65	근저당권 지상권	
32	죽정리	121-1	121-14	전	63	27	38	27	성봉순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11, 103동 601호	영천신용협 동조합 박강호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65	근저당권 지상권	
			121-21	전	-	9	-	9	성봉순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11, 103동	영천신용협 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601호	박강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65		
33	죽정리	121-10	121-17	전	596	328	569	328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121-23	전	-	257	-	257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조인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4길 13		
34	죽정리	121-11	121-11	전	242	242	242	242	조영권 천병순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35	죽정리	121-12	121-20	전	672	12	349	12	이재석 정현숙 김순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9-2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1길78, 3동 305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41-14, 103동 703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21-22	전	-	320	-	320	이재석 정현숙 김순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9-2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1길78, 3동 305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41-14, 103동 703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36	죽정리	121-13	121-19	전	41	3	33	3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21-24	전	-	31	-	31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37	죽정리	121-7	121-15	도	98	22	22	22	영천시					
38	죽정리	121-8	121-16	전	441	67	66	67	이재석 정현숙 김순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9-2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1길78, 3동 305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41-14, 103동 703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39	죽정리	121-9	121-9	전	72	72	72	72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40	죽정리	124-1	124-4	도	347	162	154	162	영천시					
41	죽정리	124-2	124-5	전	197	4	177	4	김찬하 김영선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83번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05동 1801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92, 102동 608호				
			124-7	전	-	161	-	161	김찬하 조유정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83번지, 105동 1801호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녹지길142-9, 105동 1401호	최양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23	근저당권	
			124-8	전	-	13	-	13	김찬하 김영선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83번지, 105동 1801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92, 102동 608호				
42	죽정리	124-3	124-3	전	316	192	316	192	김찬하 조영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83번지, 105동 1801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24-6	전	-	124	-	124	김찬하 조영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83번지, 105동 1801호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정대근 송주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25	근저당권	
43	죽정리	125-1	125-6	답	590	345	354	345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125-7	답	-	8	-	8	김영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92, 108동 1502호				
44	죽정리	125-2	125-8	답	550	91	197	91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부림새마을	경상북도 경산시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정대근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금고 박문용 김진구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지상권	
			125-9	답	-	66	-	66	조영권 정대근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45	죽정리	125-3	125-3	답	301	201	301	201	이채윤	대구광역시 북구 매전로 17, 105동 1701호	경일신용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5-1	근저당권 지상권	
			125-10	답	-	100	-	100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하양읍 대학로295길42		
46	죽정리	125-5	125-5	답	40	40	40	40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근저당권 지상권	
47	죽정리	126	126-10	답	424	175	354	175	조유정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녹지길 142-9, 105동 1401호	최양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23	근저당권	
			126-15	답	-	25	-	25	김영선 김문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92, 102동 608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16-8, 103동 1118호				
			126-16	답	-	147	-	147	조유정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녹지길 142-9, 105동 1401호	최양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23	근저당권	
48	죽정리	126-1	126-11	도	203	51	178	51	영천시					
			126-17	도	-	228	-	228	영천시					
			126-18	도	-	5	-	5	영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26-19	도	-	103	-	103	영천시					
			126-20	도	-	39	-	39	영천시					
49	죽정리	126-2	126-12	답	1,248	6	6	6	김영선 김문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92, 102동 608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16-8, 103동 1118호				
50	죽정리	126-3	126-8	답	429	380	377	380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51	죽정리	126-4	126-13	답	7	1	1	1	조영권 정대근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김진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52	죽정리	126-5	126-14	답	416	63	63	63	정대근 채석운 조영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26길 47-7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53	죽정리	127-2	127-5	답	281	239	253	239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127-13	답	-	13	-	13	김영선	경상남도 창원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성산구 창원천로 292, 102동 608호				
54	죽정리	127-3	127-7	답	1,594	26	35	26	천병순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3동 1511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27-8	답	-	9	-	9	천병순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3동 1511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27-14	답	-	1	-	1	성갑순 성지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39, 601호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김민구 김철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253, 109동 104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117, 304동 14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소신평길 233				
55	죽정리	127-4	127-9	답	184	109	117	109	조유정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녹지길 142-9, 105동 1401호	최양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23	근저당권	
56	죽정리	128	128-5	답	128	1	128	1	조영권 정대근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128-7	답	-	34	-	34	조영권 정대근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128-8	답	-	90	-	90	조영권 정대근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조인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4길13	근저당권 지상권	
57	죽정리	129-2	129-6	답	1,859	57	29	57	성갑순 성지현 김민구 김철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39, 601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53, 109동 104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117, 304동 14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소신평길 233	영천신용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로76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58	죽정리	129-3	129-3	도	26	26	26	26	채순보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다문리 118				
59	죽정리	129-4	129-4	도	22	22	22	22	영천시					
60	죽정리	627	627-2	구	496	131	408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627-3	구	-	151	-	151	국 (농림축산식품부)					
			627-4	구	-	55	-	55	국 (농림축산식품부)					
			627-5	구	-	85	-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61	죽정리	636	636-4	구	2,011	10	99	10	국(농림축산식품부)					
			636-6	구	-	64	-	64	국(농림축산식품부)					
			636-7	구	-	24	-	24	국(농림축산식품부)					
62	죽정리	637	637-4	구	1,041	138	239	138	국(농림축산식품부)					
			637-6	구	-	72	-	72	국(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637-8	구	-	42	-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63	죽정리	637-1	637-9	구	686	14	14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64	죽정리	638	638-2	도	496	80	82	80	국 (건설부)					
65	죽정리	75	75-2	답	783	325	286	325	정을림 조영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보인리 65-1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송주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25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66	죽정리	78-6	78-6	전	1,028	1,028	1,028	1,028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송주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25	근저당권 지상권	
			78-12	전	-	2	-	2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295길 42, 102동 1113호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67	죽정리	78-3	78-8	답	484	484	484	484	이원배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201번지, 1502호	영천농업협동조합 부림새마을금고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69-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김진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78-13	답	-	1	-	1	이원배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201번지, 1502호	영천농업협동조합 부림새마을금고 김진구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69-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68	죽정리	90-2	90-6	답	499	192	360	192	최용웅 조영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799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김진구 정대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근저당권 지상권	
			90-9	답	-	154	-	154	최용웅 조영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799 경상북도 영천시	부림새마을금고 박문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충효로 148	정대근 조인규	봉월로1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4길13		
69	죽정리	90-3	90-8	답	153	5	138	5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90-10	답	-	147	-	147	조영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로 148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김진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근저당권 지상권	
70	죽정리	90-5	90-5	답	148	148	148	148	최용웅 조영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799 경상북도 영천시	부림새마을 금고 박문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 울산광역시 남구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충효로 148	김진구 정대근 송주연	봉월로133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3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295길42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5길 25		
71	죽정리	산63-3	산 63-5	도	548	46	21	46	영천시					
72	죽정리	산106	산106-1	도	1,091	4	255	4	국 (건설부)					
			산106-2	도	-	130	-	130	국 (건설부)					
			산106-4	도	-	159	-	159	국 (건설부)					
합계					31,810	13,824	13,753	13,822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도로 6개소, 주차장 2개소, 소공원 2개소, 완충녹지 2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영천시 기부채납

1. 도시계획도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617	4,930	-	-	-	2	462	4,449	4	155	481
소로	2	462	4,449	-	-	-	2	462	4,449	-	-	-
소로(특)	4	155	481	-	-	-	-	-	-	4	155	481

ㅁ 도시계획도로 세목 조서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2	1	8	국지도로	44	면도 103호선	죽정리 112번지	일반도로	
소로	2	2	8~10	국지도로	418	면도 103호선	면도 103호선	일반도로	
소로	3	1	3	특수도로	77	소로2-1	죽정리 78-3번지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2	4	특수도로	10	면도 103호선	죽정리 121-1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3	3	특수도로	60	면도 103호선	소로2-2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3	4	4	특수도로	8	면도 103호선	죽정리 126	보행자전용도로	

2. 주차장

시설명	위 치 (획지)	면 적(㎡)	비고
청통 온천 제1주차장	죽정리 111-6번지 (A-3)	1,111	
청통 온천 제2주차장	죽정리 121-11번지 (D-2)	839	

3. 공원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획지)	면 적(㎡)	비고
청통 온천 제1공원	소공원	죽정리 78-6번지 (A-1)	1,842	
청통 온천 제2공원	소공원	죽정리 121-17번지 (D-1)	655	

4. 녹지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획지)	면 적(㎡)	비고
녹지	완충녹지	면도103호선변 (상부)	495	
녹지	완충녹지	면도103호선변 (하부)	3,749	

5.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시설명	위 치 (획지)	면 적(㎡)	비고
배수시설	죽정리 125-3번지 (E-2)	201	※ 상수도 인입 시 기부채납

◈◈

기 타

고 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3호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5호(2021.08.26.)로 변경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추가**

○ 토지보상 및 매장문화재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허용용도 추가)

○ 조성토지 공급방법 변경

- 특별공급기준에 따른 산업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세부처분계획 처분방법 및 조건 변경(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시

○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영천시장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으로서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지구이며,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인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산업 및 물류·유통기능의 확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서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임

나. 개발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222,403.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6,364	1.3	
	단독주택용지	16,364	1.3	48호
산업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843,363.5	69.0	
	산업시설용지	609,279	49.9	
	연구시설용지	54,268.5	4.4	연구시설2 존치 (34,271㎡))
	물류시설용지	124,791	10.2	
	복합시설용지	20,789	1.7	
	지원시설용지	34,236	2.8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62,676	29.7	
	도 로	184,504	15.1	
	보행자도로	1,330	0.1	
	주 차 장	7,576	0.6	
	공 원	37,768	3.1	
	녹 지	110,175	9.0	
	공공청사	677	0.1	
	주 유 소	2,364	0.2	
	오수중계펌프장	100	0.0	
	저 류 지	4,022 (9,022)	0.3 (0.8)	근린공원중복 (9,022㎡)
	완충저류지	3,668	0.3	
	변 전 소	8,252	0.7	
	수도공급설비	2,240	0.2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3. 단위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가.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일원

나. 면적 : 1,222,403.5㎡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 (기정) 2008년 ~ 2022년

○ (변경) 2008년 ~ 2023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

○ 〈붙임1〉 :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7.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붙임1 참조)

8. 조성토지 공급방법 변경 사항 : 변경

○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처분대상토지					처분 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계	LH	영천시			기정	변경	
합 계		1,222,403.5	1,071,996	150,407.5					
주택	소 계	16,364	16,364	-					

처분대상토지					처분 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계	LH	영천시			기정	변경	
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15,566	15,566		2022	일반실수요자	공개입찰	공개입찰	감정평가액
	이주자택지	798	798		2021	일반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산업물류시설용지	소 계	843,363.5	713,390	129,973.5					
	산업시설용지(일반)	548,235	509,601	38,633	2021	유치대상기업	공개입찰	공개입찰,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적정이윤
	산업시설용지(외투)	61,045	23,973	37,072	2022	유치대상기업	공개입찰	공개입찰,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연구시설용지	54,268.5		54,268.5	-	유치대상기업	기조성 완료	기조성 완료	존치
	물류시설용지	124,791	124,791		2022	유치대상기업	공개입찰	공개입찰, 추첨, 수의계약	조성원가+적정이윤
	복합시설용지	20,789	20.789						
	산업시설	연면적 50%이상			2022	유치대상기업	입주심의후 수의계약	입주심의후 수의계약	조성원가+적정이윤
	산업시설외	연면적 50%미만			2022	유치대상기업	공개입찰	공개입찰	감정평가액
	지원시설용지	34,236	34,236		2021	일반실수요자	공개입찰	공개입찰	감정평가액
도시기반시설용지	소 계	362,676	342,242	20,434					
	도로	184,504	175,753	8,751	2023	관리기관	관리청 이관	관리청 이관	무상귀속
	보행자도로	1,330	1,330	-					
	공원	37,768	37,768	-					
	녹지	110,175	98,492	11,683					
	저류지	4,022	4,022	-					

처분대상토지					처분 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계	LH	영천시			기정	변경	
	완충저류지	3,668	3,668	-					
	오수중계 펌프장	100	100	-					
	수도공급설비	2,240	2,240	-					
	주차장	7,576	7,576	-	2022	일반실수요자	공개입찰	공개입찰	감정 평가액
	주유소	2,364	2,364	-	2022	일반실수요자	공개입찰	공개입찰	감정 평가액
	공공청사	677	677	-	2023	해당공공기관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
	변전소	8,252	8,252		2023	해당공공기관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개발2과(053-550-1853),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676)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Ⅲ.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Ⅳ.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산업시설용지 : 변경

(기정)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4">산업시설용지</td><td rowspan="4">산업1 ~ 산업14</td><td rowspan="4">건축물용 도</td><td>허 용 용 도</td><td colspan="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17호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적용)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산업1-4 ~ 산업1-5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산업1-6 ~ 산업1-8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산업2-1 ~ 산업2-3
C24. 1차 금속 제조업 : 산업2-4 ~ 산업2-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산업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산업6, 산업7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산업11-1, 산업13-1
C28. 전기장비 제조업 : 산업1-1 ~ 산업1~3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산업5, 산업8, 산업14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9, 산업10,산업11-2 ~ 산업12-5, 산업13-2</td></tr>
<tr><td rowspan="2">권 장 용 도</td><td>산업1~8, 14</td><td>●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 관련업종</td></tr>
<tr><td>산업9~13</td><td>●항공전자산업 관련업종</td></tr>
<tr><td>불 허 용 도</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 · 저장하는 공장</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염화수소 배출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획지의 분할 및 합병 1. 개발여건의 변화 및 용지 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획지 분할시 적정 세장비(1:1~1:2)를 감안하여 최소 1,650㎡ 이상으로 분할 가능 2. 2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획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 1.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결정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표기된 건축한계선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14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건축물의 색채 1. 건축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 등의 연출로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경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관한 사항	한다. 2.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검정색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지향하여 단지전체가 조화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지붕 1. 건축물의 지붕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의 경사지붕으로 조성한다. 2.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으로 할 경우 건축물 옥상면적의 30% 이상 녹화를 권장한다.
			•건축물 경관계획 - 건축물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따른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1.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별표1]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3. 전면공지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주차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면적에 산입한다.
		차량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대지내 차량출입 1. 대지내 차량출입에 따른 교통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모퉁이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획지면적 3,000㎡ 이하 1개소, 3,000㎡ 초과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상 입구·출구 구분설치는 가능하다.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이후에도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영천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1.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을 따른다. 2.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영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물의 재이용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14	건축물용 도	허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제 마목 연구소(산업13-1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적용)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산업1-4 ~ 산업1-5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산업1-6 ~ 산업1-8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산업2-1 ~ 산업2-3 C24. 1차 금속 제조업 : 산업2-4 ~ 산업2-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산업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산업6, 산업7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산업11-1, 산업13-1 C28. 전기장비 제조업 : 산업1-1 ~ 산업1~3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산업5, 산업8, 산업14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9, 산업10, 산업11-2 ~ 산업12-5, 산업13-2	
			권 장 용 도	산업1~8, 14	•미래형자동차 부품산업 관련업종
				산업9~13	•항공전자산업 관련업종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염화수소 배출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획지의 분할 및 합병 1. 개발여건의 변화 및 용지 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 획지 분할시 적정 세장비(1:1~1:2)를 감안하여 최소 1,650㎡ 이상으로 분할 가능 2. 2 이상의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획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 1.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결정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표기된 건축한계선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규정 중 강화된 것을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용지	산업1 ~ 산업14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색채 1. 건축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 등의 연출로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경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검정색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지향하여 단지전체가 조화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상기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지붕 1. 건축물의 지붕은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의 경사지붕으로 조성한다. 2.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으로 할 경우 건축물 옥상면적의 30% 이상 녹화를 권장한다.
			•건축물 경관계획 - 건축물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따른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1.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별표1]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체가 시행한다. 3. 전면공지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차면적에 산입한다.
		차량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대지내 차량출입 1. 대지내 차량출입에 따른 교통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모퉁이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획지면적 3,000㎡ 이하 1개소, 3,000㎡ 초과 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 안전상 입구ㆍ출구 구분설치는 가능하다.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이후에도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영천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1.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을 따른다. 2.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영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물의 재이용 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류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복합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5. 연구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6.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8.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9.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10. 공급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 1 : 4,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 1 : 4,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 1 : 4,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 1 : 4,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5.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 = 1 : 4,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20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6. 23.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포항시장(하수재생과)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476번지 및 연일읍 오천리 986번지 일원 면적 : 2,09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시설개요 : - 관로 매설 L=1,560m(D500㎜~900㎜×2열)
점 용 기 간	당초 : 2017년 6월 12일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 변경 : 2022년 6월 1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韓세상